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적용 대상별,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CONTENTS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127)

Q1 금융·재정·조세 (6)

기획재정부 (5)

-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사업자) 27
- 2.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일반국민) 28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 포함)) 29
- 4.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 (일반기업) 30
- 5.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사업자) 31

국세청 (1)

- 1.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롯데·현대카드),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가능 (경차소유자)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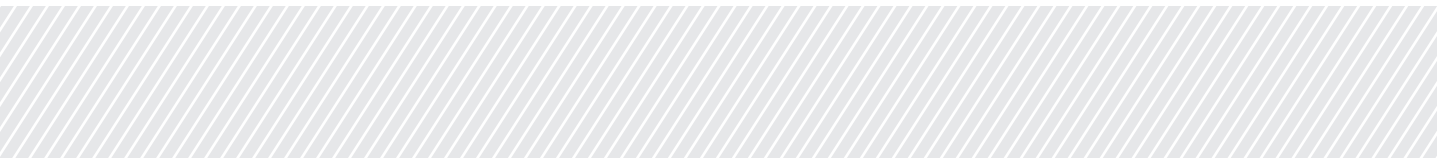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Q2 교육 (1)

교육부 (1)

- 1. 융합전공 등 학사제도 유연화, 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청년 이상(19세 이상)) 35



03 여성·육아·보육 (11)

보건복지부 (3)

- 1.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영유아) 39
- 2. 유산한 임신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여성) 40
- 3. 고위험 임신부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 (여성) 41

고용노동부 (3)

- 1.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근로자) 42
- 2.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 (근로자) 43
- 3.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44

여성가족부 (4)

- 1.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청년여성으로 확대 (청년 이상(19세 이상)) 45
- 2.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전연령) 46
- 3.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강화 및 자녀양육 지원 (취약계층·사회적약자) 47
- 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시행 (취약계층·사회적약자) 48

인사혁신처 (1)

- 1.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공무원) 49

04 보건·사회복지 (14)

보건복지부 (8)

- 1.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 (청소년 이상) 53
- 2.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환자의 인권보호장치 강화 (취약계층·사회적약자) 54
- 3. 조기노령연금,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 허용 (노인(60세 이상)) 55
- 4. 희망키움통장I 월 5만원 저축도 가능 (취약계층·사회적약자) 56
- 5.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시행 (취약계층·사회적약자) 57
- 6.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제도 시행 (의료기관) 58
- 7. 기저귀 지원, 바우처 잔여포인트 문자 안내 실시 (취약계층·사회적약자) 59
- 8. 5가 혼합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 (영·유아) 60

CONTENTS

고용노동부 (2)

- 1.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가능 (취업자) 61
- 2. 컨베이어·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일반기업) 62

여성가족부 (1)

- 1. 청소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 (아동~청소년(9~18세)) 63

식품의약품안전처 (3)

- 1.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농·림·어업인) 64
- 2. 체계적인 식중독균 보관·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전연령) 65
- 3. 당류 줄이기 실천 매장 운영 가이드 보급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66

05 공공안전 및 질서 (10)

여성가족부 (1)

- 1. 성인화상채팅 등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전연령) 69

국토교통부 (1)

- 1. 화물운송종사자자격 취득 제한 강화 (근로자) 70

국민안전처 (3)

-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71
- 2.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선 (전연령) 72
- 3.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 (전연령) 73

조달청 (1)

- 1. 맞춤형 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및 내진능력 공개 (지자체 및 공공기관) 74

경찰청 (1)

- 1.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일반국민) 75

공정거래위원회 (3)

- 1. 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불이행 시 형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일반기업) 77
- 2.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일반기업) 78
- 3.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 (일반기업) 79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06 국방·병무 (17)

국방부 (5)

1. 현역병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 (군인)	85
2.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 (군인)	86
3.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통일 (군인)	87
4. 병 복무를 하고 있는 외국 시민권자 및 재외국민 등의 복지 증진 (군인)	88
5.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예비군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개선 (예비군)	89

병무청 (7)

1.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 계층 병적관리 대상 확대 (청년(19세~29세))	90
2.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청년 이상(19세 이상))	91
3. 잔여 복무기간 3개월 미만 산업기능요원도 복무분야 변경 가능 (청년(19세~29세))	92
4.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청년(19세~29세))	93
5. 고졸검정 학력 취득자 병역처분 직권 변경 (청년(19세~29세))	94
6.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복무를 위한 병역 처분변경 신청 가능 (청년(19세~29세))	95
7. 예술·체육요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편입 취소 (청년(19세~29세))	96

방위사업청 (5)

1. 성실하게 수행한 국방연구개발, 도전정신 인정 (방위산업체)	97
2. 국방과학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 (방위산업체)	98
3. 군수품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방위산업체)	99
4. 원가 부당이득 가산금 규모 확대 (방위산업체)	100
5.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 도입 (방위산업체)	101

07 일반공공행정 (11)

외교부 (2)

1. 여권 수록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 일부 완화 (전연령)	105
2.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전연령)	106

법무부 (3)

1.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연령)	107
2.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전연령)	108
3.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 도약을 위한 첫 걸음,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연령)	109

CONTENTS

행정자치부 (1)

- 1. 해외체류자 국내주소 관리 방안 마련 (전연령) 110

관세청 (1)

- 1. 개인수입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청년~중장년(19세~64세)) 111

기상청 (4)

- 1. 기상감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선 (청소년 이상) 112
- 2. 대국민 실시간 기상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일반국민) 113
- 3. 향만기상정보 서비스를 전국 향만에 확대 시행 (청년이상(19세 이상)) 114
- 4.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기상사업자 등록, 기상예보사 면허취득 규제완화 (청년이상(19세 이상)) 115



농림·해양·수산 (39)

농림축산식품부 (23)

- 1.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산지유통업체) 121
- 2.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농·림·어업인) 122
- 3. 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최우선 지원 (청년~중년(19세~39세)) 123
- 4.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농·림·어업인) 124
- 5. 6차산업 관련 행위제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농·림·어업인) 125
- 6. 식육축산판매가공업 영업자, 축산물이력제 이행 의무 (식육축산판매가공업자) 126
- 7.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일반기업, 농업인 등) 127
- 8. 직거래농산물 지원 확대 및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추진 (일반기업, 농업인 등) 128
- 9.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 정비 (일반국민) 129
- 10.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기등록 재학생에 대한 용자 제한 완화 (농촌출신 대학생) 130
- 11. 건강한 식 서포터즈 모집 (일반국민) 131
- 12. 비닐하우스 등 원예·특작시설에 대한 내재해형 규격의 등록 및 운영방안 개선 (지자체, 농업인 등) 132
- 13. 도시농업 관련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 신설 (일반국민) 133
- 14.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농·림·어업인) 134
- 15.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주산지협업체 제도 신설 (지자체, 농업인 등) 135
- 16.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농·림·어업인) 136
- 17.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일반기업) 137
- 18.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전국민) 138
- 19.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일반기업) 139
- 20.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농·림·어업인) 140
- 21.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일반기업) 141
- 22. 식물류 수출입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출 허용 (일반기업) 142
- 23.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연구기관) 143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괄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8)

1. 보호대상 해양생물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일반기업)	144
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 폐지 (일반기업)	145
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행 (일반기업)	146
4. 법정 보호생물의 조업 중 혼획방지 (일반기업)	147
5.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지원센터 확대 운영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48
6.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림·어업인)	149
7.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어업관리 역량 강화 (일반기업)	150
8. 내수면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신설 (농·림·어업인)	151

산림청 (8)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 가능 (일반국민)	152
2.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이력제도 도입 (공무원)	153
3.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 완화 (일반국민)	154
4. 토석채취사업장내 외부토석 반입의 제한적 허용 (일반기업)	155
5.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 금지 (일반기업)	156
6.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지대상 확대 (일반국민)	157
7.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위탁 관리 시행 (지자체 및 공공기관)	158
8.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농·림·어업인)	159

09

연구개발 (1)

미래창조과학부 (1)

1. 국가 R&D 표준서식 간소화 (연구자)	163
--------------------------	-----

10

산업·에너지·자원 (9)

산업통상자원부 (5)

1.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허용 (일반기업)	167
2. KS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8
3. 고압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제도 정비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69
4. 석유화학공장 간 나프타부생가스 거래관련 규제완화 (일반기업)	170
5. 보일러, 압력용기 등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제조검사 실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71

CONTENTS

관세청 (3)

- 1.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활동 강화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72
- 2. 성실 수출업체 원상태 수출시 수입증빙내역 생략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73
- 3.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74

중소기업청 (1)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75

11 환경 (7)

환경부 (7)

- 1.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취약계층·사회적약자) 179
- 2.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 및 인증 위반 제재 강화 (일반기업) 180
- 3.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 추진 (취약계층·사회적약자) 181
- 4.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 (취약계층·사회적약자) 182
- 5.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저감 (일반기업) 183
- 6.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 (취약계층·사회적약자) 184
- 7.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일반기업) 185

목차보는 Tip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분야별(부처별)로 구성하였고, 이해를 돕기 위해 팔호안에 적용대상(생애주기)를 표기 하였습니다.



12 보훈 (1)

국가보훈처 (1)

-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무료 배송 (국가유공자) 189

별첨

- 분야별(부처별)달라지는 주요제도(신·구 대비표) 191

적용대상별 달라지는 주요제도(97)

경차소유자 (1)

국세청 (1)

1.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롯데·현대카드),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가능 32

공무원 (2)

인사혁신처 (1)

1.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49

산림청 (1)

1.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이력제도 도입 153

군인 (4)

국방부 (4)

1. 현역병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 85
 2.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 86
 3.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통일 87
 4. 병 복무를 하고 있는 외국 시민권자 및 재외국민 등의 복지 증진 88

근로자 (3)

고용노동부 (2)

1.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42
 2.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 43

국토교통부 (1)

1.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제한 강화 70

CONTENTS

농·림·어업인 (10)

농림축산식품부 (6)

1.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122
2.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124
3. 6차산업 관련 행위제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125
4.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134
5.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136
6.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140

해양수산부 (2)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149
2. 내수면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신설	15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64
----------------------------	----

산림청 (1)

1.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159
------------------------------	-----

농촌출신 대학생 (1)

농림축산식품부 (1)

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기등록 재학생에 대한 응자 제한 완화	130
---	-----

방위산업체 (5)

방위사업청 (5)

1. 성실하게 수행한 국방연구개발, 도전정신 인정	97
2. 국방과학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	98
3. 군수품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99
4. 원가 부담이득 가산금 규모 확대	100
5.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 도입	101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지정기부금 단체 등 포함) (1)

기획재정부 (1)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 29

사업자 (2)

기획재정부 (2)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27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31

산지유통업체 (1)

농림축산식품부 (1)

1.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121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1)

농림축산식품부 (1)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축산물이력제 이행 의무 126

여성 (2)

보건복지부 (2)

1. 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40
2. 고위험 임산부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 41

연구기관 (1)

농림축산식품부 (1)

1.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143

CONTENTS

연구자 (1)

미래창조과학부 (1)

- 1. 국가 R&D 표준서식 간소화 163

예비군 (1)

국방부 (1)

- 1.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예비군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개선 89

의료기관 (1)

보건복지부 (1)

- 1.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제도 시행 58

일반국민 (10)

기획재정부 (1)

- 1.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28

농림축산식품부 (4)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 정비 129
- 2. 건강한 숲서포터즈 모집 131
- 3. 도시농업 관련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 신설 133
- 4.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138

경찰청 (1)

- 1.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75

산림청 (3)

-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 가능 152
- 2.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 완화 154
- 3.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지대상 확대 157

기상청 (1)

- 1. 대국민 실시간 기상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113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일반기업 (20)

기획재정부 (1)

- 1.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 30

농림축산식품부 (4)

- 1.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137
- 2.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139
- 3.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 허용 141
- 4. 식물류 수출입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출 허용 142

산업통상자원부 (2)

- 1.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허용 167
- 2. 석유화학공장 간 나프타부생가스 거래관련 규제완화 170

환경부 (2)

- 1.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 및 인증 위반 제재 강화 180
- 2.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저감 183

고용노동부 (1)

- 1. 컨베이어·산업용 로봇의 안전검사 대상 추가 62

해양수산부 (5)

- 1. 보호대상 해양생물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144
- 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 폐지 145
- 3.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행 146
- 4. 법정 보호생물의 조업 중 혼획방지 147
- 5.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어업관리 역량 강화 150

산림청 (2)

- 1. 토석채취사업장내 외부토석 반입의 제한적 허용 155
- 2.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 금지 156

공정거래위원회 (3)

- 1. 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불이행 시 형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77
- 2.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78
- 3.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 79

CONTENTS

일반기업, 농업인 등 (2)

농림축산식품부 (2)

- 1.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127
- 2. 직거래농산물 지원 확대 및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추진 128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포함) (11)

산업통상자원부 (3)

- 1. KS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 168
- 2. 고압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제도 정비 169
- 3. 보일러, 압력용기 등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제조검사 실시 171

고용노동부 (1)

- 1.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44

해양수산부 (1)

- 1.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지원센터 확대 운영 148

국민안전처 (1)

- 1.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71

식품의약품안전처 (1)

- 1. 당류 줄이기 실천 매장 운영 가이드 보급 66

관세청 (3)

- 1.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활동 강화 172
- 2. 성실 수출업체 원상태 수출시 수입증빙내역 생략 173
- 3.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 174

중소기업청 (1)

- 1.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175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2)

조달청 (1)

1. 맞춤형 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및 내진능력 공개 74

산림청 (1)

1.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위탁 관리 시행 158

지자체 및 공공기관, 일반기업 (1)

환경부 (1)

1.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 185

지자체, 농업인 등 (2)

농림축산식품부 (2)

1. 비닐하우스 등 원예·특작시설에 대한 내재해형 규격의 등록 및 운영방안 개선 132
2.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주산지협의회 제도 신설 135

취약계층·사회적약자 (10)

보건복지부 (4)

1.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환자의 인권보호장치 강화 54
2. 희망키움통장I 월 5만원 저축도 가능 56
3.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시행 57
4. 기저귀 지원, 바우처 잔여포인트 문자 안내 실시 59

환경부 (4)

1. 가슴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179
2.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 추진 181
3.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 182
4.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 184

CONTENTS

여성가족부 (2)

- 1.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강화 및 자녀양육 지원 47
-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시행 48

취업자 (1)

고용노동부 (1)

- 1.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가능 61

국가유공자 (1)

국가보훈처 (1)

- 1.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무료 배송 189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30)

영유아(0세~5세) (2)

보건복지부 (2)

- | | |
|-------------------------------|----|
| 1.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 39 |
| 2. 5가 혼합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 | 60 |

아동~청소년(9~18세) (1)

여성가족부 (1)

- | | |
|---------------------------------|----|
| 1. 청소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 | 63 |
|---------------------------------|----|

청소년 이상 (2)

보건복지부 (1)

- | | |
|-----------------------------------|----|
| 1.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 | 53 |
|-----------------------------------|----|

기상청 (1)

- | | |
|-----------------------|-----|
| 1. 기상감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선 | 112 |
|-----------------------|-----|

청년 이상(19세 이상) (5)

교육부 (1)

- | | |
|-------------------------------------|----|
| 1. 융합전공 등 학사제도 유연화, 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 35 |
|-------------------------------------|----|

CONTENTS

여성가족부 (1)

- 1.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청년여성으로 확대 45

병무청 (1)

- 1.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91

기상청 (2)

- 1. 항만기상정보 서비스를 전국 항만에 확대 시행 114
- 2.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기상사업자 등록, 기상예보사 면허취득 규제완화 115

청년(19세~29세) (6)

병무청 (6)

- 1.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 계층 병적관리 대상 확대 90
- 2. 잔여 복무기간 3개월 미만 산업기능요원도 복무분야 변경 가능 92
- 3.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93
- 4. 고졸검정 학력 취득자 병역처분 직권 변경 94
- 5.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복무를 위한 병역 처분변경 신청 가능 95
- 6. 예술·체육요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편입 취소 96

청년~중년(19세~39세) (1)

농림축산식품부 (1)

- 1. 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최우선 지원 123

청년~중장년(19세~64세) (1)

관세청 (1)

- 1. 개인수입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111

목차보는 Tip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를
적용대상별, 생애주기별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노인(60세 이상) (1)

보건복지부 (1)

- | | |
|----------------------------|----|
| 1. 조기노령연금,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 허용 | 55 |
|----------------------------|----|

전연령 (11)

외교부 (2)

- | | |
|-------------------------------|-----|
| 1. 여권 수록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 일부 완화 | 105 |
| 2.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 106 |

법무부 (3)

- | | |
|--|-----|
| 1.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107 |
| 2.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108 |
| 3.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 도약을 위한 첫 걸음,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109 |

행정자치부 (1)

- | | |
|------------------------|-----|
| 1. 해외체류자 국내주소 관리 방안 마련 | 110 |
|------------------------|-----|

여성가족부 (2)

- | | |
|------------------------------------|----|
| 1.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 46 |
| 2. 성인화상채팅 등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 69 |

국민안전처 (2)

- | | |
|--------------------------------------|----|
| 1.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선 | 72 |
| 2.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로 변경 | 73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 | |
|------------------------------|----|
| 1. 체계적인 식중독균 보관·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65 |
|------------------------------|----|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다들 잡니다

- 분양별 부정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적용 대상법,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분야별

(부처별)달라지는 주요제도

1. 금융 · 재정 · 조세
2. 교육
3. 여성 · 육아 · 보육
4. 보건 · 사회복지
5. 공공안전 및 질서
6. 국방 · 병무
7. 일반공공행정
8. 농림 · 해양 · 수산
9. 연구개발
10. 산업 · 에너지 · 자원
11. 환경
12. 보훈

01

금융 · 재정 · 조세

기획재정부 | 국세청



1

국세청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롯데·현대카드),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 가능

시행일 : 2017년 9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044-215-421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여 2017. 7. 1.이후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 대상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행(52개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추가(5개 업종)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2016. 12. 28.) 보도자료,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2017. 1. 3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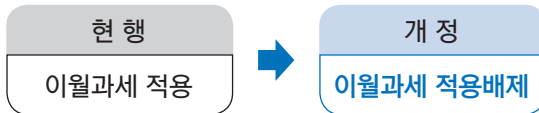
- 추진배경 세원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 추가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044-215-4314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 이월과세 적용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



|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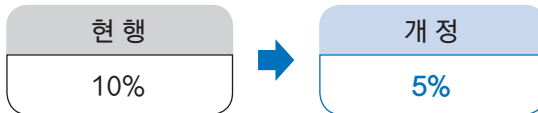
- 추진배경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주요내용 이월과세 제도는 배우자 증여공제(6억원)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도입한 제도
- 증여자의 취득가액보다 증여가액이 낮아지는 경우 등 이월과세 적용시 세부담이 본래의 세부담보다 작은 경우 조세회피 방지 목적의 이월과세 제도 적용의 실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이월과세 적용 양도세액과 미적용 양도세액을 비교하여 과세하도록 개정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

| 기획재정부 |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주식보유한도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로 축소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축소

- 추진배경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
-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주식보유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에서 5%로 축소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

| 기획재정부 | 관세협력과 (☎ 044-215-4453)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써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세의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잠정 가격신고 허용

■ 일정 요건* 하에 잠정가격 신고를 통한 관세의 신고가격 조정을 허용하였습니다.

* (일정 요건) ① 수입물품에 객관적 배분·계산 ② 실질적인 현금 지급·영수 등

■ 잠정가격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 1개월 전까지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등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2016. 12. 28.) 보도자료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

- 추진배경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의 조화
- 주요내용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써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국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잠정가격신고 허용
② 제출서류 : 수입물품 거래가격 조정 계획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등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 기획재정부 | 국고과 (☎ 044-215-5117)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웹사이트(전자수입인지.kr)에 접속하여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면 해당 문서에 직접 첨부됩니다.
 - 온라인 상에서 One-Stop으로 구매·결합이 진행되므로 사용자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 * 종전 : 수입인지 출력 ➡ 스캔하여 별도 파일로 관리
 - * 개선 : 발급 웹사이트에 전자문서 업로드하면 수입인지 자동 결합
 - 과세 대상 문서에 수입인지가 직접 첨부되므로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방지하며,
 - 과세 대상 문서의 변경도 방지되므로 계약서 임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시행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행

- 추진배경 납부 편의성 제고, 수입인지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하여 제도 도입
- 주요내용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시행
 - 온라인 상에서 One-Stop으로 구매·결합이 진행되어 편의성 제고
 - 과세대상 문서와 수입인지 직접 결합으로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 차단
 - 과세대상 문서의 변경도 방지하므로 계약서 임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국세청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롯데·현대카드),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가능

| 국세청 | 소비세과 (☎ 044-204-3392)

경차 소유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유류구매카드)를 발급하는 신용카드사를 기존 신한카드 1곳에서 3곳(17.4월롯데·현대카드추가선정)으로 확대하고

- 아울러, 카드형태도 현재 유류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범용카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금년 9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서민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08년 도입된 제도로서 경차 1대만을 보유한 세대가 유류구매카드로 연료 구입시 유류세의 일부(ℓ 당 250원)를 연간 20만원* 한도로 환급해 주는 제도
* 제도 활성화를 위해 '17. 4. 10.부터 한도 상향 조정(10만원 → 20만원)

| 참고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보도자료 >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경차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사 확대 및 범용카드 전환

- 추진배경 카드 이용편의를 제고하여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유류구매카드 발급 신용카드사 확대(신한 → 신한·롯데·현대)
 ② 유류구매전용카드 → 범용카드(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 가능)
- 시행일 2017년 9월
 ※ '17.4월, 롯데·현대카드사 추가 선정 →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경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02

교육

교육부



융합전공 등 학사제도 유연화, 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 교육부 | 대학학사제도과 (☎ 044-203-6252)

2017년 2학기부터 대학(원)생은 융합전공 등 폭넓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다학기·유연학기를 통해 진로탐색과 인턴 등 취업준비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 대학별 졸업요건 충족하는 범위에서 집중적인 학습시 1년에 석사과정 졸업이 가능하고 캡스톤 디자인·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졸업논문을 대체하여 단기에 석사 수준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 벽지·오지의 군인 등 특정직군 근무자나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한 학생 등 직장 위치나 직역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도 학교 밖 일정한 장소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17년 5월 개정됨에 따라, 각 대학의 학칙이 개정되면 올해 2학기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대학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 참고 | 교육부홈페이지 > 교육부소식 > 보도자료 > 융합전공·전공선택제 도입, 창의혁신인재 양성 기반 마련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
- 주요내용
 - ①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 ②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 ③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 ④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 ⑤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 ⑥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 시행일 2017년 5월 8일 - 대학 학칙 개정 후 2학기부터 적용



1

보건복지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일 : 2017년 9월 4일

Before

생후 6개월~12개월 미만 영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After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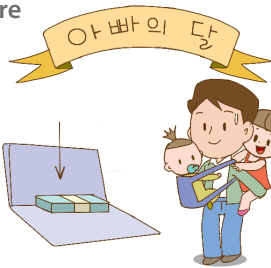
2

고용노동부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200만원으로 인상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Before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After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

| 질병관리본부 |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19)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를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2016년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나, 2017년도 9월부터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지원 대상자에 대해 2017년 9월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 확대
- 주요내용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지원대상자 확대
(생후 6~12개월 미만 → 생후 6~59개월 이하)
- 시행일 2017년 9월 4일
※ 백신수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유산한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보건복지부 | 보험급여과 (☎ 044-202-2731, 2733, 2734)

유산을 했거나 이미 출산을 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지원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9월 1일(예정)부터 출산(조산, 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였으나, 오는 9월* 부터 임신상태가 종료(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 * 현재 개정안 법제처 심사 중
 - *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2017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추진배경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주요내용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대상 확대
* (현재) 임신중인 자 → (변경) 임신, 유산, 출산한 자
- 시행일 2017년 9월 1일(예정, 법제처 심사 중)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환경 지원

| 질병관리본부 | 공공의료과 (☎ 044-202-2533)

고위험 임신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 집중치료지역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9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430병상을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 올해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 4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신규 25병상을 추가 지원하여 고위험 임신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치료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입니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등 치료시설 확대

- 추진배경 고령산모 및 다태아 증가로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가 매년 증가에 따라 치료전달체계 구축,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 주요내용 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확대 설치 및 운영 지원
② 신생아집중치료병상이 부족한 권역을 중심으로 병상 설치 및 운영 지원
- 시행일 2017년 하반기

“아빠의 달”,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현재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으로 지급하였으나,
 -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제도 사용 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제도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동 기간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40%* 지급 *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 아빠의 달 특례

'14.10.1.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 증액 (통상임금 100%, 상한 150만원)

• 아빠의 달 특례 기간 확대

'16.1.1. ‘아빠의 달’ 기간 첫 1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 확대

• 아빠의 달 상한액 인상

'17.7.1. 이후 출생 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아빠의 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제도

- 추진배경 출산 장려 및 순차적 육아휴직 활성화
- 주요내용 2017.7.1. 이후 출생 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아빠의 달) 사용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받는 사후지급금을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지급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 계약기간 만료시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육아휴직 복귀 인센티브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지급하였습니다. (사후지급금 제도)
 - 이에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 현행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 신설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 종료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육아휴직을 종료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은 그 근로 계약기간 만료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 추진배경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 주요내용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만료시 사후지급금 지급
-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 고용노동부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97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고, 일하는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시작하는 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금까지는 인프라 설치비용과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주의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였으나, '17년 하반기부터는 중견기업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로환경, 근무제도를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 확산 촉진
- **주요내용** 지원대상 사업장을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
- **사업내용**
 (유연근무제 활용지원)
 - (지원대상) 유연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활용토록 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지원)
 - (지원대상) 재택·원격근무를 새로이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내용) 정보시스템,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은 직접 지원하고, 설비·장비 등의 구입 비용은 용자로 지원
 - * 직접지원: 총 투자금액의 35%한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 용자지원: 총 투가 금액의 50%한도 내에서 최대 4천만원 지원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청년여성으로 확대

| 여성가족부 | 여성인력개발과 ☎ 02-2100-6197)

여성인재아카데미 교육대상의 신규 확대 및 교육 질적 제고를 통해 교육이 한층 내실화 됩니다.

-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재직여성 등이 여성인재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17년 하반기부터는 청년여성들이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조직 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등에게도 맞춤형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또한, 중간관리자 기본과정 수료생에게 보다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심화 과정이 신규 개설될 계획입니다.

| 참고 |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인재양성센터 ☎ 02-3156- 6101, 6145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 : <http://kwla.kigepe.or.kr>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청년여성 으로 확대

- 추진배경 교육대상 신규확대 및 교육 질적 제고를 통한 여성리더 양성
- 주요내용
 - ① 청년여성(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대상 조직 적응력 강화, 경력개발 플랜, 필수 커뮤니케이션 등 교육 신규 개설
 - ② 중간관리자 기본과정(기업·공공기관 여성 중간관리자, 임원 후보군, 전문직 여성 등 교육) 수료생 대상 조직관점 관리역량 강화, 조직문화 변화 촉진 등 심화과정 교육 신규 개설
- 시행일
 - 신입직원 (2년차 이하) : 2017년 9월
 - 대학생 등 : 2017년 10월

여성가족부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 여성가족부 | 가족정책과 (☎ 02-2100-6325)

생애주기와 가족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를 개발하고, 부모교육 강사 (약 200명)를 양성하여 부모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 공통·성인 교육 외에도, 미래의 예비부모인 중·고등학생, 영·유아자녀 부모, 초·중·고등학생 자녀 부모 등 세부적으로 생애 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을 체계화 하였습니다.
- 아버지 교육과 가족특성별 특화교육 등을 마련하여 각 가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또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강사를 연계해 드립니다.

부모교육 내실화

• 추진배경 체계적인 부모교육 표준 매뉴얼·콘텐츠 마련으로, 효과적 부모교육 실시 및 자녀양육 역량 강화

• 주요내용 ① 생애주기와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 매뉴얼 개발(12종)

영역	공통 (1종)		예비부모 (3종)		영·유아기 부모 (2종)		학령기 부모 (3종)			특화 (3종)		
대상	공통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영아 부모	유아 부모	초등학생 부모	중학생 부모	고등학생 부모	아버지	가족 특성별	상담

② 부모교육 강사 양성(약 200명) : 총 3단계 60시간 운영(기본과정, 전문과정, 강의력 향상과정)

• 시행일 2017년 7월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 강화 및 자녀양육 지원

| 여성가족부 | 가족지원과 (☎ 02-2100-6352,6348)

학습 환경이 구비된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이 설치되어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의 거주 공간 외에도, 중등교실, 고등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별도 설치하고,
 -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 수업을 실시하는 ‘교실형 위탁교육’을 통해 청소년한부모의 학력취득을 지원합니다.
 - * 수업은 모두 재적학교에서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며, 졸업장 또한 재적학교명으로 발급
- 또한, 청소년한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상담·숙식·분만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참고 | 입소문의 : 애란원(나래대안학교) 02-363-4750, 4720

* 온라인 입소상담(www.aeranwon.org)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및 학습권 강화

- 추진배경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양육 및 학습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의 거주공간 외 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설치
 -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애란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② 정규 중·고등학교에 학적을 둔 임신·출산 청소년한부모 대상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 수업 실시
 - * 퇴학, 자퇴, 휴학 중인 학생은 복교절차를 통해 학적 회복 후 입학 가능
 ③ 상담·숙식·분만의료 지원
- 시행일 2017년 9월초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시행

| 여성가족부 |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02-2100-620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이 금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서비스가 더욱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 임신·출산·육아 등과 함께 여성의 주된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을 포함하여, 기존 경력단절여성 등의 재취업 지원과 함께 경력단절 예방과 창업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처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경력단절예방 및 재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새일센터 기능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경력단절예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17.3.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주요내용 ①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주요 사유인 ‘혼인’을 추가(안 제2조제1호)
 ②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을 수행하기 위해 시·도 또는 시·군·구에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일센터의 법적 명칭)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기능을 열거(안 제13조)
 ③ 경력단절여성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신설)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 인사혁신처 | 성과급여과 (☎ 044-201-8397)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이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명 ‘아빠의 달’ 수당으로 알려진 동 제도는 맞벌이 부부의 출산 증가와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 민간 근로자에 대해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7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 근로자 및 공무원 등 맞벌이 부부가 통일성 있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동일하게 반영하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 참고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아빠의달 수당 확대

‘아빠의 달’ 수당 지급상한액 인상

• 추진배경 출산장려 및 부모 모두의 육아참여 활성화로 일·가정 양립

• 주요내용

‘아빠의 달’ 수당(공무원 수당규정 개정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현행

- 월봉급액 지급 (상한액 150만원)
-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 지급



개정

- 월봉급액 지급 (둘째이상 상한 200만원으로 인상*)
- *17.7.1.이후 출생하는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
-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 지급(동일)

※ 민간 육아휴직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동일한 기준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04

보건 · 사회복지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보건복지부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일 : 2017년 12월 3일

Before



야구장 등 대형 체육시설
(1천명 이상 관객 수용)

After



'금연구역 확대'



52,000개 실내 체육시설 확대

2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환자의 인권보호장치 강화

시행일 : 2017년 5월 30일

Before

이전에는
입원 시



6개월간 입원

After

1단계



3개월간 치료를
위한 입원

2단계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지정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044-202-2822)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추가됩니다.

- 지금까지 공중이용 체육시설 중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0호
- 12월 3일부터 체육시설* 중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에 위치한 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 추진배경 국민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
- 주요내용 (현행) 야구장, 축구장 등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추가)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또한 금연구역 지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 참조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환자의 인권보호장치 강화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정책과 (☎ 044-202-2863)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17.5.30.)되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치료받을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됩니다.

- 기존 정신보건법은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만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간의 갈등에 악용되는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모든 강제입원에 대해 입원 적합성 심사를 도입, 입원전 2주간 진단병원 도입 및 2인의 전문의에 의한 입원 결정 등 강제 입원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입원은 최대 6개월만 입원시킬 수 있던 기간제한을 없애, 실효성을 높이고 꼭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와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장치 강화

- 추진배경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및 복지서비스 지원,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 주요내용 ① 모든 강제입원에 대해 입원적합성심사 및 치료입원 전 2주간 진단입원 도입, 2인의 전문의에 의한 입원결정 등 입원요건·절차 강화
 ②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및 전 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근거 마련 등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조기노령연금,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 허용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정책과 (☎ 044-202-3632)

보험료 납부 재개를 통해 연금 수급액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 정지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 법정 수급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수급하지만 연금액이 월 0.5%씩 감액

- 그 동안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중 A값(가입자 평균소득, '17년 21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강제적으로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였지만,
 - 앞으로는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연금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 연금 감액에도 불구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정지 신청 및 보험료 납부 재개를 허용함으로써
 - 연금액 감면을 만회하는 등 노후 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법안, 3.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허용

- 추진배경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및 납부재개 허용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강화
- 주요내용 지급정지 요건(평균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강제로 지급정지
→ 평균소득 이하의 경우도 선택에 의해 지급정지 및 납부재개 가능)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희망키움통장 I 월 5만원 저축도 가능

| 보건복지부 | 자립지원과 (☎ 044-202-3072)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7년 8월 1일부터 희망키움통장 I 가입 가구가 월 5만원도 저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의 월 적립금은 10만원으로 고정되었었습니다만,
 - 올 8월부터는 월 10만원 저축이 어려운 가구를 위하여 본인 적립금 5만원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희망키움통장 I 5만원 저축 시행

희망키움통장 I 본인저축액 선택권 확대

- **추진배경** 최근 저소득층의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져 월 10만원으로 고정된 본인 저축액이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제한 요인으로 작용
* '16년 분위별 소득 증가율(전년비) : (1분위)△5.6% (2분위)△0.8%
- **주요내용** 희망키움통장 I 본인저축액 10만원외 5만원도 선택 가능
 - 가구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희망키움통장 I 월 5만원 저축에 가입하면
 - 3년 동안 매월 5만원씩 저축하고 생계·의료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 지원금 지원
 - * (지원액 예시, 월소득 160만원인 4인 가구) 본인저축 월 5만원 + 월 근로소득 장려금 23만원 → 3년 후 약 1,000만원 (본인 적립액 180만원 포함)
- **시행일** 2017년 8월 1일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시행

|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 044-202-3321)

오는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에 대하여, 매년 재 신청 없이 소득·재산조사를 다시하여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안내해 드리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매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장애인연금을 재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잘 몰라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 「수급희망 이력관리」시행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이력관리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나 수급자였다가 탈락한 경우에 가능하며,
 - 이력관리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이후 5년간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시행

- 추진배경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과 본인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 주요내용
 - ①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 재신청 없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
 - ②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 안내
- 시행일 2017년 8월 9일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제도 시행

|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정책과 (☎ 044-202-2473)

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금액 기준 제도를 시행하여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수수료를 책정하여 왔으나, 2017년 9월 21일 부터는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이 고시로 정하여 운영됩니다.
 - 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건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하여,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및 제증명수수료 과다책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또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제증명수수료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제증명 수수료 고지 기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 참고 |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고시는 정부안을 확정하여 6월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될 예정입니다.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 추진배경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제증명수수료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가격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 운영
- 시행일 2017년 9월 21일

기저귀 지원, 바우처 잔여포인트 문자 안내 실시

| 보건복지부 | 출산정책과 (☎ 044-202-339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바우처 이용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7월 5일부터 바우처 잔액, 사용기한을 문자서비스(SMS)로 안내합니다.

- 지금까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지원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절차가 복잡하여 확인이 번거로웠습니다.
- 이번 문자 안내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자들의 바우처 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저귀 지원 문자 안내서비스 개요

- 추진배경 잔여 바우처 및 사용 기간 등을 문자서비스로 안내하여 바우처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바우처 잔액 등 문자서비스 시행 : 바우처 잔액, 잔여 사용기간, 홈페이지 확인 방법 등 안내
- 시행일 2017년 7월 5일

5가 혼합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

| 질병관리본부 | 예방접종관리과 (☎ 043-719-6839)

여러 종류의 감염병을 한번에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하여 예방접종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5종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을 예방하기 위해 3가 혼합백신인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폴리오) 및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각각 3회(총 9회) 접종하였습니다.
 - 2012년에는 4가 혼합백신 DTaP-IPV(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를 우선 도입하였고, 2017년 6월 19일부터는 5가지 감염병을 동시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을 도입하여 접종횟수가 총 3회로 감소됩니다.

| 참고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5가지 감염병을 예방하는 5가 혼합백신 도입

2017년도 국가예방접종 무료 접종 항목 확대

- 추진배경 여러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백신 도입으로 보호자 방문 횟수 경감 및 접종대상자 편의성 향상
- 주요내용 국가예방접종 추가 도입(16종 → 17종)
 - * 17종: BCG, HepB, DTaP, IPV, DTaP-IPV, Td, Tdap, Hib, MMR,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폐렴구균, HepA, HPV, 인플루엔자, DTaP-IPV/Hib(추가)
- 시행일 2017년 6월 19일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 개인형퇴직연금 가입가능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58)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여 취업자들이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년도 7월 26일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은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 직역연금 적용자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017년도 제도변경

- 추진배경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 주요내용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가입 가능
-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컨베이어·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과 (☎ 044-202-7734)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주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7.10.29.부터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금까지는 이들 기계를 사용하다 안전장치 해제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공포('16.10.27.)하여 컨베이어와 산업용 로봇의 사용상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 [참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전검사 대상 확대

- **추진배경**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의 안전검사 실시
- **주요내용**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에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추가
- **시행일** 2017년 10월 29일

청소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 온라인으로도 가능

| 여성가족부 | 청소년정책과 (☎ 02-2100-6241)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이자 청소년우대의 증표인 청소년증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지금까지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분실 신고와 재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2017년 12월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발급대상 : 만 9~18세 청소년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발급기관 :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
- 활용용도 : 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 * 2017년 1월 교통카드 기능 추가



| 참고 |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소년, 이제 ‘청소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청소년증 온라인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 추진배경 온라인 분실신고·재발급 시스템 마련을 통한 청소년증 이용 확대
- 주요내용
 - ① 온라인 분실신고(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 ② 온라인 재발급신청(오프라인 → 온·오프라인)
- 시행일 2017년 12월(예정)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사전예측 시스템 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안전과 (☎ 043-719-3244)

여름철 치사율이 높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내 연안의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동향 정보를 사전 예보하는 시스템을 개발·운영할 계획입니다.

* 비브리오패혈증 :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 섭취 또는 상처를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매년 약 50~60명 발병하여 이 중 50% 이상이 사망하는 질환

■ 비브리오패혈증균은 수온, 염분 등 해양 환경인자에 연동하여 발생하므로 국내 연안에서 실시간 수집되는 해양인자를 이용하여 발생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예보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예보시스템은 올해 연말 구축완료를 목표로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6~10월 기간 중에는 시험운영을 통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발생 양상 검증 및 사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시스템 구축으로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시기 및 지역을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강화 및 홍보를 통해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사전 예보제 운영

- 추진배경 비브리오패혈증 사전 예방을 위한 발생 예측모델 개발 및 사전 예보시스템 운영
- 주요내용
 - ① 해양환경인자를 이용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모델 개발
 - ② 국내 연안의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사전예보
 - ③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위험시기 및 장소 사전 예측을 통해 집중적인 비브리오 패혈증 검사 강화 및 예방 홍보
- 시행일 2017년 11월 31일('17.6월 부터 시범운영)

체계적인 식중독균 보관·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예방과 (☎ 043-719-2105)

식중독 원인식품 규명과 신·변종 식중독균 신속규명을 위해 식품 유래 식중독균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식품에서 분리된 식중독균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하기 위한 「식중독균 균주은행」을 구축·운영 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균주 전용 보관 시설·설비는 물론 균주 보관·분석·관리에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이 설치되며 이를 통해 보유 균주 계대배양 등 균주은행 자원을 표준화할 계획입니다.

■ 「식중독균 균주은행」에 체계적으로 보관·관리된 식중독균은 식중독 발생 시 원인규명 및 추적 관리에 활용되며, 현장 맞춤형 검사키트 개발을 위한 표준시료 제공, 식중독 원인균 출처에 대한 국제분쟁 시 해결을 위한 자료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중독균 균주은행 구축·운영

- 추진배경 체계적인 식중독균 체계적 보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주요내용
 - ① 균주 전용 보관 시설·설비 도입
 - ② 균주 보관·분석·관리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등 설치
 - ③ 균주은행 자원 표준화
- 시행일 2017년 11월 15일

당류 줄이기 실천 매장 운영 가이드 보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62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당류섭취를 줄이기 위한 “당류 줄이기 실천 매장 운영 가이드”를 보급하겠습니다.

- 비만, 당뇨병 등의 원인으로 알려진 당류의 과잉섭취를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매장 등에서 세트 메뉴 주문시 탄산수, 생수 등 저당 음료 선택 ▲음료 주문 시 시럽 양 차등 선택 등 고객 선택권 확대를 통한 당류 저감 판매환경 조성 가이드를 마련 배포 할 계획입니다.
 -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에는 당류 저감 매장운영을 위한 메뉴판, 지점 운영(조리) 매뉴얼, 카운터 주문 안내 멘트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 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당류저감 매장에서는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음식별 영양표시 사항에 당류 함량을 추가토록 하여 당류 저감 환경을 공고히 해 나갈 것입니다.
 - * ('16년 자율 영양표시 실천업체 현황) 커피전문점 9,554개, 분식점 및 패밀리레스토랑 1,164개,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시설 식품접객업소 2,071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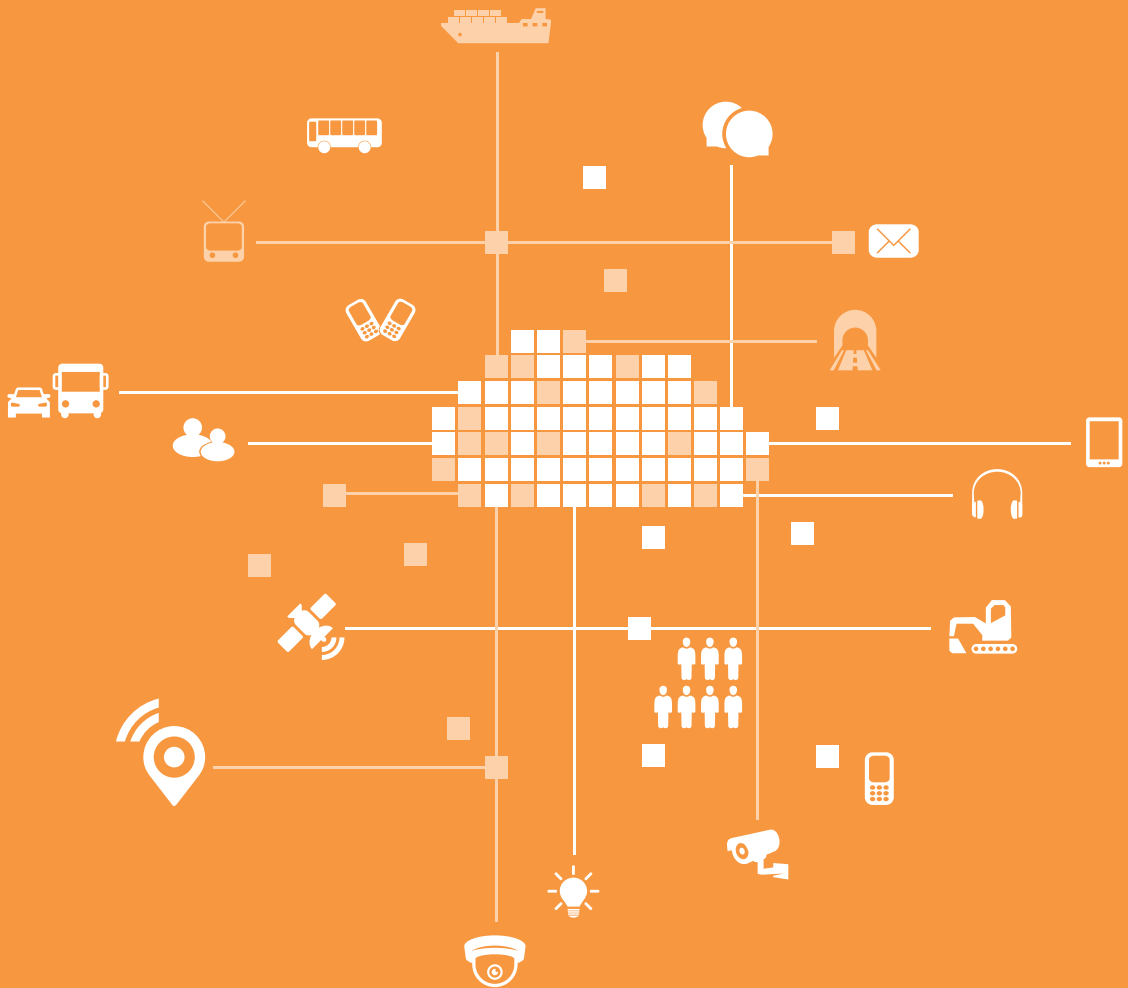
외식에서의 당류 저감 환경 조성

- 추진배경 당류 섭취 줄이기 환경 조성 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① 프랜차이즈 매장 내 당류 줄이기 실천 방법 운영 가이드 마련 및 배포
 - 가이드 적용 당류 저감 시범 매장 운영(10월)
 - ② 음료류 판매점 자율 영양표시 지원 등 확대(12월)
- 시행일 2017년 12월

05

공공안전 및 질서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 국민안전처 | 조달청 | 경찰청 | 공정거래위원회



1

여성가족부

성인화상채팅 등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시행일 : 2017년 6월 21일

Before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를 악용



After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를 적극 유도



2

경찰청

도로교통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내용

시행일 : 2017년 6월 3일

Before

- 우측으로 양보
- 신설
- 신설
- 신설
- 과태료
- 100m 후방 설치



After

- 우선통행
- 영유아 하차확인
- 면허 발급 시 지문확인
- 외국인 자료제공 요청
- 과태료 5개 확대
- 거리제한 없앴
(안전상각대 탄력적으로 위치 조정)



성인화상채팅 등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02-2100-639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를 악용한 성매매 근절 대응이 한층 강화됩니다.

- 2014년 이후 지금까지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및 처벌 대상 등 경고문구가 게시되고 있었습니다.
-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을 추가 게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대화화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성인화상채팅 등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 **추진배경** 성인화상채팅 등에 성매매 경고 문구 게시로 성매매 근절 대응 강화
- **주요내용** 성매매 경고문구 추가
(기존)
 - 성매매는 불법이며 성을 파는 사람, 성을 사는 사람,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그 알선영업·유인·권유·강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단체·집단이 개입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기소(기소유예)된 경우 신고한 사람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 지청장을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시행일** 2017년 6월 21일

화물운수종사자자격 취득 제한 강화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044-201-4017)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방지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 됩니다.

- 현행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 위반한 자’에서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대형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로 확대하고,
 - ‘최근 3년간 난폭운전, 대열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제한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 ※ 법 시행 전(2017.7.17.) 위반행위에 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법 시행 이후(2017.7.18.)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
- 앞으로, 화물운송종사자자격 취득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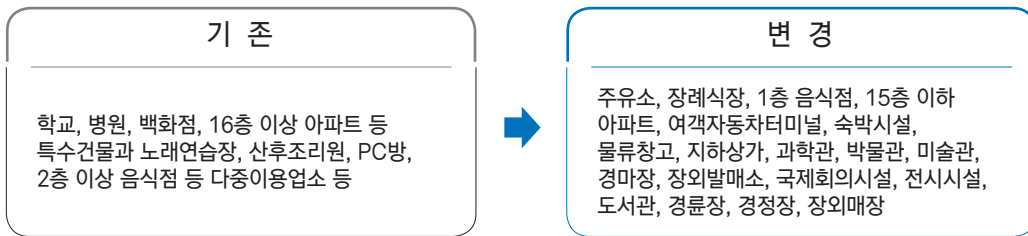
- 추진배경 운수종사자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대형 교통사고 사전 예방
- 주요내용 ① 최근 5년내 다음 사유인 경우 화물운수종사자자격 취득 제한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무면허로 처벌받거나 면허정지 상태로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대형교통사고(3명이상 사망 또는 20명이상 사상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② 최근 3년내 다음 사유인 경우 화물운수종사자자격 취득 제한
 - 대열운행(앞뒤로 줄지어 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 시행일 2017년 7월 18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 국민안전처 | 재난보험과 (☎ 044-205-5353)

재난이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도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지금까지 의무보험은 사회적 이슈가 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후에 개별 부처별로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재난취약시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2017년 1월 8일부터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9종 시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의 보상금액은 자동차배상보험과 같이 '1인당 1억5천만원, 사고당 무한'으로 정하여 피해자 보상을 강화하였고, 특히 가입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보상해 주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올 하반기에는 기존 시설 가입유예기간(7월 7일까지)이 만료되어 '17.1.8이전의 시설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 |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 추진배경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보험 추가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① 보상하는 손해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 및 재산 피해
 ② 보상하는 금액 : 대인 1억5천만원(사고당 무한), 대물 10억원
- 시행일 2017년 1월 8일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선

| 국민안전처 | 안전개선과 ☎ 044-205-4226

국민안전처에서는 영어 안전신고 접수·처리기능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시스템 기능을 확대·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4년 12월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통 후 2017년 5월 말까지 안전신문고 앱 설치 200만건, 안전신고 30만건을 돌파했으며,
 -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보다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여 왔습니다.
- 2017년 하반기 부터는 국내 체류 외국인 및 방문객 증가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에 영어 안전신고 접수·처리기능을 추가 개설하고,
 - 외국인 거주가 많은 지역(경기 33%, 서울 27% 등)과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시기별·지역별 안전신고 내용과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강화하여 재난예방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안전신문고 시스템 개선

- 추진배경 장애인·고령자·국내체류 외국인 등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안전신고 기능을 제공하여 안전신문고 대표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안전신문고 앱과 포털에 영어 안전신고 접수·처리기능 추가 개설·운영
② 안전신고 정보 분석기능 강화를 통한 재난예방 정책 수립 지원
- 시행일 2017년 10월

연안체험활동 사전 신고기관, 지자체에서 해경서로 변경

| 국민안전처 | 해양안전수상레저과 (☎ 044-205-2453)

국민 편의를 위해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을 지자체에서 해양경비안전서(안전센터)로 10월 19일부터 변경됩니다.

- 지금까지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지자체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관을 변경하여 앞으로는 해양경비안전서(안전센터)에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해양경찰 관서에서 체험활동의 안전점검과 함께 신고도 접수받게 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해 나갈 것입니다.
- 또한, 해양경비안전서(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상안전종합정보(<https://imsm.mpss.go.kr>) >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 추진배경 국민편의를 위해 연안체험활동 신고 해경서로 변경
- 주요내용
 - ① 신고기관 변경(지방자치단체 → 해양경비안전서)
 - 휴일 및 야간에도 신고 가능하여 국민 편의 증진
 - 연안체험활동의 체계적 안전관리 가능
 - ②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 수상안전 종합정보 → 연안체험활동 종합정보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및 내진능력 공개

| 조달청 | 시설사업기획과 (☎ 042-724-7418)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공개할 계획

- 지금까지 지진력을 산정할 때 유효지반가속도는 지진구역계수를 80% 적용하고,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능력 파악은 곤란하였으나,
 - 2017년 6월 이후 발주하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은 지진구역계수를 100% 적용하고,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준공표지판에 공개
- 또한 시설비 예산을 고려하여 수요기관과 협의 후,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건축물의 내진등급을 상향 적용됩니다.

| 참고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내진설계 강화방안 공지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내진설계 강화방안

- 추진배경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강화
- 주요내용
 - ① 지진하중 상향 적용(지진구역계수 80% → 100%)
 - ② 건축물 내진능력을 산정하여 준공표지판에 공개
 - ③ 수요기관과 협의 후, 건축물 내진등급 상향 적용
- 시행일 2017년 6월

도로교통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02-3150-2251)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신설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사항 제공 의무 신설 ▲과태료 부과항목 5개 추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방법 변경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탄력 조정 등입니다.

* 개정도로교통법에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는 미포함(해당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

■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모든 탑승자가 하차 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이는 지난해 7월 광주의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4살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8시간 동안 방치돼 중태에 빠졌던 사고 이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정된 부분입니다.

■ 또한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반드시 제공해야하며 차주가 없는 상태에서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하는 사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아울러 과태료 부과 항목도 추가됩니다.

- 과태료 부과 항목과 금액은 ▲지정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통행구분 위반 등이 추가됩니다.

■ 그리고 구급차 등 긴급 차량 통행 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양보토록 한 규정을 좌·우측 양보하도록 개정됐으며, 2차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에서의 사고·고장 시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를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탄력적으로 조정됩니다.

| 참고 |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 개정안 공포 참조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 개정안 공포 참조

도로교통 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분야의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 교통안전 확보 및 국민편익 추구

· 주요내용

① 긴급자동차 양보방법을 합리적으로 변경(法)

- (法)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좌·우측으로 양보하도록 함

※ 개정조항 : 제29조제5항

※ (현행)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 (개정) 좌·우측으로 양보

경찰청

• 주요내용

- ②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신설(法·승·規則)
 - (法)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시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
 - ※ 개정조항 : 제53조제4항·제156조제9호
 - (승) 범칙금 12만원(승용) / (規則) 벌점 30점 신설
 - ③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 부과(法·승)
 - (法) 추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 ※ 개정조항 : 제54조제1항·제156조제10호
 - (승) 범칙금 12만원(승용) / (規則) 벌점 15점
 - ④ 운전면허 발급 시 지문 확인 근거 마련(法·승·規則)
 - (法)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지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 개정조항 : 제87조의2
 - (승) 공단이 본인 확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
 - ※ 개정조항 : 제86조제5항제3호의2
 - (規則) 본인 여부 확인 시 사용가능한 신분 증명서 종류 규정
 - ※ 개정조항 : 제83조의2
 - ⑤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근거 마련(法)
 - (法) 지방청장이 운전면허를 소지한 외국인 등의 체류지·지문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개정조항 : 제137조의2
 - ⑥ 과태료 부과 항목(5개) 확대(法·승)
 - (法) 과태료 항목에 지정차로 위반, 통행구분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추가
 - ※ 개정조항 : 제160조제3항
 - (승) 위반 항목의 범칙금액에 1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과태료 금액 책정
- | 구 분 | 금 액 (만원) | | |
|-----------------|----------|-----|-----|
| |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 ㉠ 지정차로위반(일반도로) | 4 | 4 | 3 |
| ㉡ 지정차로위반(고속도로) | 6 | 5 | - |
| ㉢ 통행구분 위반 | 8 | 7 | 5 |
|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6 | 5 | 4 |
| ㉤ 보행자보호 불이행 | 8 | 7 | 5 |
|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6 | 5 | 4 |
- ⑦ 안전삼각대 설치 위치 탄력적 조정(規則)
 - (規則) 고속도로에서 차가 사고·고장이 난 경우 안전삼각대의 설치 위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안전삼각대를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삼각대로 규정*
 - ※ (기존) 후방 100미터 → (개정 후)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
 - ※ 개정조항 : 시행규칙 제40조제③항
 - *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5 고장자동차의 표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0의5 안전삼각대 ▲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삼각대 모두 사용 가능

• 시행일 2017년 6월

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불이행 시 형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 경쟁정책과 (☎ 044-200-4303)

피조사업체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제출 거부,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2017년 7월 19일부터 형벌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2017년 10월 19일부터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보고)명령 등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피조사업체의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폐지하고, 형벌 및 이행강제금을 병과토록 바뀌었습니다.

|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3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22.)

자료제출 명령 등 미이행에 대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추진배경 자료 제출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통한 공정위 조사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형벌 부과(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
 - ② 이행강제금 부과
(1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1일 평균매출액의 3/1,000 이하 범위 내에서 산정)
- 시행일 과태료 폐지, 형벌 부과 : 2017년 7월 19일
이행강제금 부과 : 2017년 10월 19일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 시장감시총괄과 (☎ 044-200-4491)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제23조의2)에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 사익편취행위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적발력 제고를 위해 내부 신고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동안 공정거래법 시행령(제64조의7)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편취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17.10.19.부터 사익편취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내부 신고를 유도하여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적발력 제고
-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법제23조의2) 포함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과 ☎ 044-200-4332)

2017년 7월 19일부터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상장 20%, 비상장 30%)와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거래, 주식소유 현황, 계열사와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여 시장의 감시를 받아야 합니다.
 - *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이들 규제 외 상호·순환출자 금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까지 적용받고 있으므로 새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5~10조원 기업집단임

| 참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 (2017.3.30.)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

- 추진배경 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
- 주요내용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적용
- 시행일 2017년 7월 19일

06

국방 · 병무

국방부 | 병무청 | 방위사업청





1

국방부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서관 임용제도 시행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Before



After



'희망 시 부서관 임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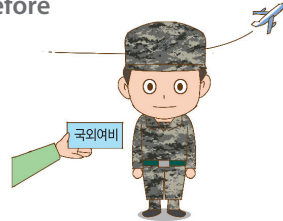
2

국방부

병 복무를 하고 있는
복수국적자(시민권자) 등
재외국민의 복지 증진

시행일 : 2017년 5월 17일

Before



입영희망원 신청한
복수국적자 만

After



제외거주사실
확인시 지급

3

병무청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 계층 병적관리
대상 확대

시행일 : 2017년 9월 22일

Before

병적관리대상



병적관리대상

After



4급 이상공직자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

4

병무청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시행일 : 2017년 9월

Before

일괄기재

병적증명서



After

내가 신청한
항목 기재

병적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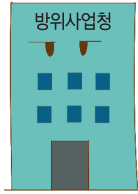
5

방위사업청

군수품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시행일 : 2017년 6월 21일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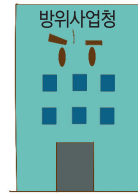


중개수수료
신고
규정없음



After

2백만불 이상인
사업 대상



'신고제 도입'
'의무적 신고'



6

방위사업청

원가 부당이득 가산금 규모 확대

시행일 : 2017년 6월 21일

Before

부당이득금의 1배 부과



After

최대 2배 부과



원가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현역병 인사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제정)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17년 7월 1일부터 각 군의 자체규정으로 운영해 왔던 현역병의 인사관리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첫째, 현역병의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되, 그 분류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보관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병 특기 재분류의 시행을 위해 ‘사고나 질병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부대와 특기를 재분류 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 셋째, 분류결과와 실제 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훈령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명시하였고, 현역병이 전방 및 해·강안지역의 전투부대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군 전투력 강화와 병사의 복무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 이번 훈령 제정은 각 군에서 운영하던 병 인사관리에 대해 국방부에서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병 인사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 참고 |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

- 추진배경 현역병 인사관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훈령 제정
- 주요내용
 - ① 부대 및 특기 분류 :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 분류결과 3년간 보관
 - ② 보직 : 병과와 특기에 부합되는 직위에 최초 배치되면 전역시까지 근무
 - ③ 재보직 : 특별한 이유없이 행정병 등으로 재보직하는 사례 방지하기 위해 ‘사고나 질병 등 임무수행 불가능한 경우’ 등 기준 명시
 - ④ 검증 : 분류결과와 실제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 위반시 관련자 처벌
 - ⑤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명시
 - ⑥ 전투부대 지원 : 전방 및 해·강안 전투부대 복무 희망시 지원 가능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02-748-5128)

2017년 7월 1일부터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 (이하 유공신체장애병사)'는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는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부상을 당한 병이 신체장애인(5급이상)이 되면 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없었습니다.

* 간부의 경우 2002년부터 계속 복무할 수 있는 제도 시행중

모범이 될 만한 행위(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

-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여 전군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
- 희생을 감수하고 숭선수범하여 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드높인 행위
- 작전수행 중 큰 전공을 세운 행위
- 부하 또는 동료 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본인의 희생을 무릅쓴 행위

■ 국방부에서는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유공신체장애인이 된 27세 이하의 병사 또는 예비역 병사가 부사관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3.27.)하였고, 7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군인을 예우하고, 군인이 복무의욕이 고취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참고 | 군인사법 시행규칙(제14조)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

- 추진배경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신체장애군인을 예우하고 현역군인의 복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유공신체장애병사의 부사관 임용제도 마련
- 주요내용
 - ① 지원자격 : 유공신체장애병사(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모범이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병사, 현역 또는 27세 미만 예비역 모두 지원 가능)
 - ② 모집연령 : 18세 ~ 27세(군인사법 제15조 임용연령 준수)
 - ③ 선발시기 : 소요발생시 각군 계획 하 시행
 - ④ 이외 세부사항은 공고 시 각군 참모총장이 정함.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통일

| 국방부 | 인력정책과 (☎ 02-748-5133)

2017년 6월 22일부터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이 성별 및 양성과정 구분 없이 4년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남성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인데 반해, 여성 부사관 및 부사관학군단 출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성별 및 양성과정의 구분 없이 모든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동일하게 4년으로 적용함으로써
 - 성별 및 양성과정에 따라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다르게 적용하여 발생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 양성평등의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여군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참고 | 「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4년으로 통일

- 추진배경 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성별 및 양성과정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및 직업안정성 보장
- 주요내용 성별이나 양성과정에 관계없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단일화(4년)
- 시행일 2017년 6월 22일

병 복무를 하고 있는 외국 시민권자 및 재외국민 등의복지 증진

| 국방부 | 복지정책과 (☎ 02-748-6613)

병 복무 중인 외국 시민권자에 대한 국외 여비 지급기준을 보완하고 재외국민 군복무자의 재외거주 확인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지금까지는 입영희망원을 신청한 시민권자에게만 국외 여비를 지급했으나, 입영희망원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국외여비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전)입영희망원을 제출한 시민권자 → (후)복무중인 시민권자 전원 대상

■ 또한, 자진 입대한 재외국민에게 정기휴가 및 전역, 귀가시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재외 거주사실 확인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였습니다.

* (전)재외거주사실확인서 → (후)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 참고 | 국방부 홈페이지 > 업무정보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여비 지급훈령

국외영주권자 등 병복무시 휴가여비 및 전역시귀가여비 지급 훈령 개정

- 추진배경 시민권자 및 재외국민으로서 병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의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도록 여비지급 규정 보완
- 주요내용
 - ① 시민권자에 대한 여비지급 훈령 보완
 - 자진 입대한 시민권자가 시민권 국가로 정기휴가, 전역귀가 시 여비지급
 - ② 재외국민으로서 군 복무중인 병사의 재외거주사실 확인 시, 재외거주사실확인서 외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사실확인 가능 시 지급할 수 있도록 훈령개정
 - ③ 업무담당자의 착오, 지연에 의한 여비 미지급 사실 확인 시 소급지급 가능
- 훈령 개정일 2017년 5월 17일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예비군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개선

| 국방부 | 예비전력과 (☎ 02-748-5243)

예비군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의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효율성을 높여 행정소요를 줄이고 대군신뢰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 민·관·군 통합 훈련으로 지역단위 총력안보태세 확립

- 지금까지 예비군홈페이지는 Active-X 방식을 적용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만 접속할 수 있었는데, 다양한 웹 브라우저(Safari, Chrome 등)에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그리고 전자정부인증센터에서 공인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핸드폰 기종에 따라 인증서 저장 불가, 불편사항 문의 시 대응미비 등
- 또한, 예비군이 주로 찾는 서비스인 ‘나의 훈련정보’, ‘훈련장안내’, ‘훈련 연기신청’ 등을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비군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개선 항목

- 추진배경 다양한 OS와 웹브라우저에서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사용하고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와 관련된 상용SW 최신화
- 주요내용 ① Active-X 제거(다양한 OS 및 브라우저 서비스 제공)
 ② 최신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및 사용자 친화적인 UI* 개선
 * UI : user interface의 준말로, 시스템의 사용 환경을 의미
 ③ 전자정부 인증센터에서 인증절차를 예비군홈페이지에서 인증 수행
 ④ 관련된 상용SW의 최신화
- 시행일 2017년 9월

병무청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 계층 병적관리 대상 확대

| 병무청 | 공정병역추진단 (☎ 042-481-2900)

병역이행에 대해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계층의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관리를 위하여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까지 병적관리대상이 확대됩니다.

- 지금까지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그 자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였으나,
- 2017년 9월 22일부터는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공직자 및 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액 5억원 이상)와 그 자녀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이들에 대해서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의무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 등 병역이행 전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부당한 병역회피·면탈 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 계층 병적관리대상 확대

- 추진배경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이용한 병역면탈 행위 예방 및 투명·공정한 병역이행으로 공정병역문화 확산
- 주요내용 ① 관리대상 : 4급 이상 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 연예인 / 체육선수
 ② 관리내용 : 병역준비역 편입부터 입영, 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 (보충역의 경우 복무만료)될 때까지의 병역사항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 병무청 | 병역공개과 (☎ 042-481-2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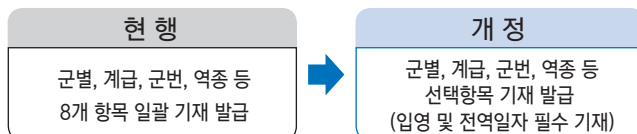
지금까지 병적증명서 발급 시 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의 병역사항을 일괄 기재하여 발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군복무 여부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하는 항목(군별, 계급, 군번 등)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 추진배경 민원인 선택 항목 중심의 병적증명으로 국민 눈높이 맞춤형 정 구현

• 주요내용 ① 군복무를 마친 사람



②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
- 병역판정검사일자, 신체등급 등 기재하여 발급(현행과 동일)

• 시행일 2017년 9월

병무청

잔여 복무기간 3개월 미만 산업기능요원도 복무분야 변경 가능

| 병무청 | 산업지원과 (☎ 042-481-2773)

지금까지는 잔여 복무기간 3개월 미만인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업체의 생산설비 폐쇄·이전·축소 등으로 자격증 관련 해당분야에 복무할 수 없는 경우, 옮길 업체를 직접 구하여 지방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고 전직할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3개월 미만의 짧은 잔여 복무기간에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에 적합한 해당분야를 찾기가 곤란한 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일업체 내에서 복무분야를 변경하여 본인이 소지한 자격증 직무분야 외의 다른 제조·생산분야에도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감면, 각종 병역처분 등 병역이행 전 과정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게 됩니다.

잔여 복무기간 3개월 미만자 복무 분야 변경 가능

- 추진배경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분야 변경제도 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
- 주요내용 해당 업체의 생산설비 폐쇄·이전·축소 등 사유의 잔여 복무기간 3개월 미만 산업기능요원이 소지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직무분야 외 다른 제조·생산 복무분야로 변경 가능
- 시행일 2017년 7월 3일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8)

병역을 면제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신체검사 등을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은 본인이 원할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 그러나,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병역이행을 희망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면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병역 선택 폭이 확대되고, 건전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이탈주민 병역 면제 제도 개선

- **추진배경** 본인이 원하여 병역을 면제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병역이행을 원할 경우 병역처분 변경 근거 부재
* 질병 치유, 학력변동의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 제도를 이미 시행중임.
- **주요내용** 본인이 원하여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신체검사 등을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병무청

고졸검정 학력 취득자 병역처분 직권 변경

|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청장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 지금까지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학력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병역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만,
- 2017년 9월 22일 부터는 24세 이하자가 고졸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그 학력에 맞추어 병역처분이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당시에는 고등학교 중퇴이하의 학력을 유지하다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현역병 입영을 회피하는 편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고졸학력 인정 검정고시 합격자 병역처분 직권 변경

- 추진배경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대한 병역처분 변경 근거 미비
 * 고교 재학 중인 자가 졸업한 경우는 병역처분 직권 변경 중임
- 주요내용 ①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받은 사람이 고졸인정 검정고시 합격한 경우 직권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변경
 ② 24세까지 검정고시 합격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복무 중에 있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복무를 위한 병역 처분변경 신청 가능

|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68)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복무를 원하면 병역처분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현역복무를 원하여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만,
- 앞으로는 복무기관에 배치되어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 추진배경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 선택권 보장을 통한 자진 병역이행문화 조성
- 주요내용
 - 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병으로 입영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신청 가능
 - ② 복무기간은 예술·체육요원 등의 현역병 입영 복무기간 계산방식 준용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9제4항)현역병 입영의 경우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병무청

예술·체육요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편입 취소

| 병무청 | 사회복무정책과 (☎ 042-481-3005)

예술·체육요원¹⁾의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됩니다.

- 지금까지는 승부조작 등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취소하였으나, 불법 스포츠도박,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었습니다.
- 따라서, 2017년 9월 22일부터는 의무복무기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고, 원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 병역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술·체육요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편입 취소

- 추진배경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
- 주요내용 예술·체육요원 복무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시 편입 취소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1) 예술·체육요원은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해 병역법 제33조의7과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11에 따라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편입기준은 예술 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한 사람,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사람이며, 체육 분야는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 1위에 입상한 사람이다.

성실하게 수행한 국방연구개발, 도전정신 인정

| 방위사업청 | 획득정책과 (☎ 02-2079-6317)

창의·도전적 목표설정으로 성실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하였음에도 실패한 경우에는 성과를 인정하여 「국가계약법」에 따른 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성실수행인정제도”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도입됩니다.

-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달리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는 연구에 실패한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연구기관에 지체상금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제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핵심기술 연구개발에는 연구목표 달성의 어려움에 따라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실패한 경우 위 제재처분을 면제해주는 ‘성실수행인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

성실수행인정제도 추진 계획

- 추진배경 창의·도전적 연구개발 수행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마련
- 주요내용 ①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면제
②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국방과학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

| 방위사업청 | 기술기획과 (☎ 02-2079-6336)

업체가 국방과학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납부 시기를 업체 현실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 지금까지는 기술수출시 납부하는 기술료를 일괄적으로 계약후 1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하였고, 민수품 이외의 착수기본료는 분할 납부가 불가능 하였습니다.
 - 2017년 5월부터는 국외 기술실시계약의 기술료와 그 외의 기술수출로 구분하여, 해외 기술실시 계약은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를 분리하여 납부하고, 그 외의 기술수출은 외국으로부터 대금 수령 일정에 따라 납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모든 착수기본료는 분할 납부가 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해양경비안전서(안전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국방과학기술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

- 추진배경 업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술료 납부시기에 따른 업체 부담
- 주요내용 ① 기술수출 기술료 납부 시기 개선(필요시 → 의무화)
 - 국외 기술실시계약 : 착수 기본료와 경상기술료로 구분하여 납부
 - 그 외의 기술수출 : 외국으로부터 대금 수령후 1개월 내 납부
 ② 착수기본료 분할 납부
- 시행일 2017년 5월 12일

군수품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 방위사업청 | 계약제도심사팀 (☎ 02-2079-4199)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6월 21일부터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합니다.

- 군수품 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사업예산이 2백만불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중개 또는 대리행위를 위해 외국기업과 수수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무역대리업체는 수수료 신고서 등을 입찰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수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중개수수료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 및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 '16년 11월 이미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나, 중개수수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본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존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보완하고, 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령 > 방위사업법·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 추진배경 중개수수료 등록을 통한 군수품 무역대리업 거래 투명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군수품 무역대리업체가 2백만불 이상 사업에 대해, 중개·대리 행위를 위해 외국기업과 수수료에 대한 계약 체결한 경우 방위사업청에 신고
 - ② 계약과정에서 중개수수료 금액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③ 미·거짓 신고 업체에 대한 제재조항 규정
- 시행일 2017년 6월 21일

방위사업청

원가 부당이득 가산금 규모 확대

| 방위사업청 | 원가총괄팀 (☎ 02-2079-4278)

방위사업 분야의 원가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2017년 6월 2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 건에 대하여 원가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최대 2배까지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방위사업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전까지는 방위사업법 제58조에 따라 원가부정행위에 대한 가산금을 부당이득금의 1배를 부과해 왔으나,
- 원가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을 원가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 가산금은 부당이득금 규모, 하도급자와 공모 여부, 부정한 행위의 반복적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1배에서 부터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참고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69조

가산금 산정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69조)

가산금 산정기준	부과기준
1. 기본금액의 산정 가. 부당이득금 5억원 이상, 부당이득금 비율 20% 이상 나. 가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이득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부당이득금 비율 10% 이상 20% 미만 다. 그 밖의 경우	부당이득금의 2배 1.5배 1배
2. 가산금의 가중 가. 하도급자와 공모한 경우 나. 최근 5년 이내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다. 최근 5년 이내 적발 횟수가 2회인 경우 * 시행일 이전의 부당이득행위는 횟수 산정에 미포함	기본금액에 50% 가중 50% 가중 30% 가중
3. 가산금의 감경 가.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나.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된 후 다른 부정한 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 이 경우 적발된 부당이득행위, 자진하여 신고한 부당이득행위 모두에 적용	가중 후 50% 감경 30% 감경

원가 부당이득 가산금 규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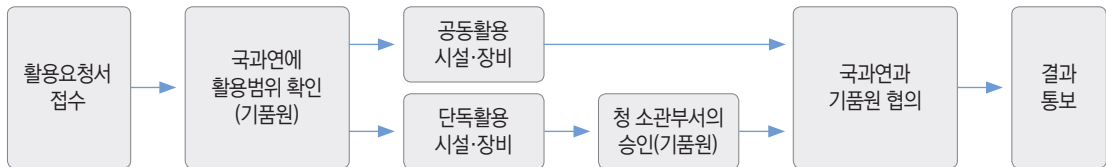
- 추진배경 방위사업 분야의 원가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
- 주요내용 ① 원가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최대 2배까지 가산금 부과
② 하도급자와 공모 여부, 부당이득행위의 반복 적발 여부 등에 따라 가산금 가중 또는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가산금 감경
- 시행일 2017년 6월 21일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 도입

| 방위사업청 | 획득정책과 (☎ 02-2079-6371)

국방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게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연구개발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한 차례 시설·장비에 대한 대외 수요조사 후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7년 6월부터는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라면 언제든지 공동활용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동활용 신청 방법은 국방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가 활용요청서를 작성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면 일정 및 관련사항을 협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관련기관에 해당절차 공문 발송완료)



<참고-국과연 보유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절차>

| [참고](#)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칙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시설·장비 공동활용 제도

- 추진배경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 활성화
- 주요내용 방산업체·일반업체·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 가능
- 시행일 2017년 6월 21일

07

일반공공행정

외교부 | 법무부 | 행정자치부 | 관세청 | 기상청



1

법무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시행일 : 2017년 6월 3일

Before

신 설

After



2

법무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행일 : 2017년 5월 30일

Before

신 설

After



3

법무부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
도약을 위한 첫 걸음!

시행일 : 2017년 6월 28일

Before

신 설

After



4

관세청

개인수입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으로 통관
소요시간 단축

시행일 : 2017년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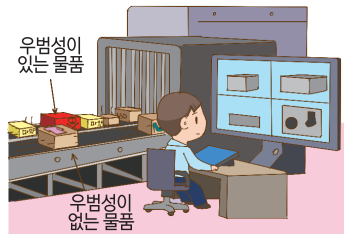
Before

해외직구 증가로 특송화물 처리 지연



After

전자적으로 일괄심사해 신속통관



여권 수록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 일부 완화

| 외교부 | 여권과 (☎ 02-2100-7722)

국제화 시대에 따르는 외국식 이름에 대한 선호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여권에 수록되는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귀화자, 복수국적자 또는 영주권자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표기를 허용해 왔습니다.
 - 2017년 하반기부터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로 인해 국제화 시대로의 변화에 부응하고 그간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 외교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권 수록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 일부 완화 계획

- 추진배경 국제화 시대에 따르는 외국식 이름에 대한 선호 증가
- 주요내용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
- 시행일 2017년 6월 27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 외교부 | 여권과 (☎ 02-2100-7722)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 사용의 허가 신청시, 외교부에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PICAS)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인 여권사본을 민원인이 별도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예외적 여권 사용의 허가를 신청할 경우 여권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습니다.
- 2017년 하반기부터는 서류제출 간소화로 보다 편리하게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 외교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서류 제출 간소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 증진 추구
- 주요내용 민원인의 여권사본 제출 부담 면제
- 시행일 2017년 6월 27일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73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과태료를 분할납부하거나 그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을 5%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해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치의 일시해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뉴스 > 보도자료 > 과태료, 납부 방법은 편하게 부담은 적게 바뀐다

2017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관련 변경

- 추진배경 과태료 납부에 있어 국민 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신용카드·직불카드에 의한 과태료 납부 도입
 ②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 제도를 정비하고, 가산금을 인하
 ③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도입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법무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02-2110-373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필수적)와 광역시·도(임의적)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부 및 시·도의 경우 우선 서울시 및 경기도에 설치·운영됩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성이 있는 조정위원회에 의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위원회는 5명에서 30명까지 교수, 법조인,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므로 분쟁해결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 조정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60일로 정하고,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어 신속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소송이나 민사조정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뉴스 > 보도자료 >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한다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추진배경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하고 합리적 해결
- 주요내용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필수적) 및 시·도(임의적)에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②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전문성이 있는 조정위원회에 의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 시행일 2017년 5월 30일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 도약을 위한 첫 걸음,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02-2110-3167)

2017. 6. 28.부터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재란 법원의 재판 대신 당사자 합의에 따라 중재인으로부터 판정을 받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재판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음
- 중재 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상승 및 새로운 일자리 확충,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됩니다.
 - 중재가 활성화되면 분쟁해결 시간 및 비용이 감소하여 기업 환경이 개선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됩니다.
 - 국제중재 사건이 경쟁국인 싱가포르 수준으로 증가할 경우 연간 6,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국제중재 사건이 현재 70여건에서 약 2배인 158건으로 증가할 경우 통·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 6,200개의 청년 일자리 확충 예상
- 법무부는 법률 시행에 맞추어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절차 등이 규정된 시행령을 제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윈스톱 국제중재센터의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참고 | 법무부 홈페이지 > 법무뉴스 > 보도자료 > 이제 국제중재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중재산업 활성화의 토대 구축!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추진배경 고부가가치의 국제중재를 산업으로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
- 주요내용 ①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의 체계적 지원 시스템 구축
② 분쟁해결시설 설치, 중재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등을 통한 중재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해외체류자 국내주소 관리 방안 마련

| 행정자치부 | 주민과 (☎ 02-2100-3837)

2017년 12월 3일부터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내주소 관리방법이 명확해 진다.

- 그동안은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국내 주소 관리방법이 규정되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체류하는 경우 부모 등 국내에 주소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 주소로 신고 할 수 있다.

-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없다면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다.
-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 참고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유학갈 때 국내주소 미리 신고 하세요.

해외체류자 국내주소 관리 방안 마련

- 추진배경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관리 방법을 마련하여 거주불명등록 되는 불편 등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 제고
- 주요내용
 - ① 해외체류자 주소 관리 방안 명확화
 -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의 주소로 신고, 없는 경우는 읍·면·동 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
 - ② 해외체류사실 확인을 위한 법무부장관(출입국자료)과 외교부장관(재외국민등록자료)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개인수입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 관세청 | 특수통관과 (☎ 042-481-7835)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으로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통해 개인구매자의 통관 소요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 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라 특송화물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스마트 통관심사제도를 통해 심사시간을 단축하여 보다 신속하게 특송화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가격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방식 특송물품과 요건확인 비해당 물품에 대하여 일정시간 경과 후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됩니다.

특송화물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

- 추진배경 특송화물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
- 주요내용 특송화물 중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가격 미화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물품과 요건확인 비해당 물품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의 심사·수리로 신속통관 지원
- 시행일 2017년 10월

기상청

기상감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선

| 기상청 | 관측정책과 (☎ 02-2181-0696)

관측공백 지역 최소화와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 참여형 날씨제보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2014년부터 스마트폰 기반 “날씨제보 앱”을 운영해 왔으나 시민 참여와 활용도가 낮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시스템 기능과 참여 방법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계절별 동·식물 출현, 기상현상·기상재해관측 제보 기능 추가, 제보 정보 공유 및 현상에 대한 통계분석을 위한 웹페이지 개발 등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날씨 상태를 제보하고,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또한 대학생, 동호회 등 지역별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친근하고 익숙한 날씨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기상감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선

- 추진배경 관측공백 지역 최소화와 국민생활 접점의 기상정보 제공
- 주요내용
 - ① 날씨 제보 기능 개선(기상현상, 계절관측, 기상재해 등)
 - ② 제보 정보 공유 및 통계분석을 위한 웹페이지 구축
 - ③ 지역별 모니터링단 운영(대학생, 동호회 등)
- 시행일 2017년 12월부터

대국민 실시간 기상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 기상청 |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415)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실시간 기상정보 오픈 API 서비스를 확대하여 기상정보의 가공 생산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상산업을 활성화하고 일반 국민이 편리하게 기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오픈 API 는 예보구역정보, 동네예보정보, 중기예보정보, 보건기상지수, 생활기상지수, 레이더영상정보, 위성영상정보 등 7종이지만, 금년 7월부터는 지진정보와 기상특보정보가 추가되어 총 9종을 서비스하게 됩니다.
 - 특히 추가되는 지진정보와 기상특보정보는 지진발생 및 위험기상이 예상되는 시기에 즉시 제공되어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 기상청은 실시간 오픈 API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스템을 보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상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 오픈API > 기상청 검색

대국민 실시간 기상 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 추진배경 기상산업을 활성화 및 국민의 기상정보 이용 편의성 제공
- 주요내용 기존 7종 외 추가로 2종 제공하여 총 9종 서비스
 - 기존정보(7종): 예보구역정보, 동네예보정보, 중기예보정보, 보건기상지수, 생활기상지수, 레이더영상정보, 위성영상정보
 - 추가제공 정보(2종): 지진정보, 기상특보정보
- 시행일 2017년 7월부터

항만기상정보 서비스를 전국 항만에 확대 시행

| 기상청 | 해양기상과 ☎ 02-2181-0743

해양 안전사고 예방 및 선박 운항의 편의 증진을 위해 기상청은 항만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 합니다.

- 현재 부산지역 일부 항에 제공되고 있는 항만기상정보 서비스를 전국의 53개 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 또한, 유관기관 및 관계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해상특보, 해상관측실황, 초단기 예보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특히, 유관기관에 팩스와 이메일로 통보했던 방식을 개선하여, 웹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그래픽과 도표를 활용하여 더욱 알기 쉽고 신속하게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항만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및 개선 사항

- 추진배경 해양기상정보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한 국민 체감만족도 향상
- 주요내용
 - ① 서비스 대상 확대 : 부산 지역 3개항
→ 전국 53개항(무역항 30개, 연안항 23개)
 - ② 제공 요소 추가 : 4종(육상관측실황, 3시간예보, 해구예측, 천문표)
→ 7종(해상특보, 육상·해상관측실황, 초단기·3시간 예보, 해구예측, 천문표)
 - ③ 제공 방법 개선 : 팩스, 이메일 통보(일2회)
→ 웹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 시행일 2017년 8월(웹페이지 개설)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기상사업자 등록, 기상예보사 면허취득 규제완화

| 기상청 | 기상서비스정책과 ☎ 02-2181-0850

기상청은 국민의 고용창출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상사업자 등록과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합니다.

- 기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한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의 결격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파산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또한, 현행법에서 결격사유 발생으로 기상사업 등록이 취소될 시, 이러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2년간 기상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결격 사유에서 제외시키고, 기상사업 등록 결격사유의 경과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기상사업자가 되려는 국민들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기상산업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주요개정내용

- 추진배경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예보사의 면허취득의 결격사유 완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와 경제활동 제고
- 주요내용
 - ①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의 결격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법 제19조제2호)
 - ② 기상사업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 경과기관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결격사유에서 제외(법 제7조)
- 시행일 법 제19조제2호 삭제 : 2017.4.18. 시행,
법 제7조 등 개정 : 2017.6.28. 시행

농림 · 해양 · 수산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산림청



1

농림축산식품부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시행일 : 2017년 10월 14일

Before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 미검사: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After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 항목삭제



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시행일 : 2017년 10월

Before

신 설

After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인출형, 경영이양형) 출시

경조사, 질병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비 가능



3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최우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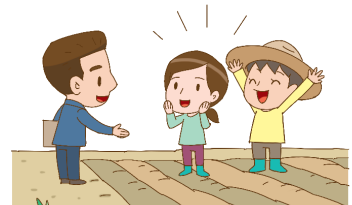
시행일 : 2017년 5월 23일

Before

2030세대 등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강화

After

한국농어촌공사 수탁농지 임대 시
2030세대 최우선 지원



4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시행일 : 2017년 6월 3일

Before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 시
출국 신고만 의무



After

구제역, 고병원성 시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포함) 신고 의무화

출입국 신고
의무화



'출입국 신고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5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 관련 행위제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시행일 : 2017년 9월 22일

Before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불가

After

농촌융복합시설인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
(기존 24개 인허가-33개 인허가)

6

농림축산식품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축산물이력제 이행 의무

시행일 : 2017년 6월 28일

Before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축산물 이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After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 이력제 적용 품목인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포장지나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7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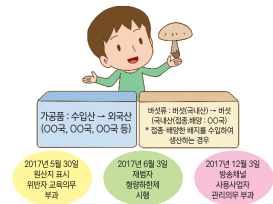
Before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



After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



8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 가능

시행일 : 2017년 10월 19일

Before



After



9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이력제도 도입

시행일 : 2017년 9월 22일

Before



After



쌀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 삭제 등 쌀 등급표시제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식량정책과 (☎ 044-200-1820)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쌀의 고품질화 촉진을 위해 쌀의 등급 표시사항 중 ‘미검사’ 항목이 삭제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쌀의 표시사항 중 등급 표시에서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이에 미검사 항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등급 표시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미검사’ 항목을 삭제하여 ‘특’, ‘상’, ‘보통’ 또는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의 등급을 표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현행정보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양곡표시 사항 중 쌀 등급표시 개선내용

- 추진배경 소비자 알 권리 확보 및 우리 쌀의 고품질화 촉진
- 주요내용 쌀 등급표시제 개선
(현행)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개정) 특, 상, 보통, 등외
- 시행일 2017년 10월 14일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044-201-1742)

하반기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인출형, 경영이양형)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한국농어촌 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고,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7%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 1577-7770(농지연금 고객센터) 농지연금포탈 www.fplove.or.kr

2017년 하반기 농지연금 신규상품 출시 계획

- 추진배경 고령농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맞춤형 농지연금 상품으로 농촌고령농가의 노후보장 강화
- 주요내용 신규 농지연금 상품
 - ① 인출형 농지연금 : 월지급액도 수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에서 필요시 수시 인출 가능
 - ②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가능(지급기간 종료시 담보농지를 공사에 매도)
- 시행일 2017년 10월(잠정, 관련법령 개정 추진중)

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최우선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과 (☎ 044-201-1738)

농식품부는 젊은 농가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자 중 2030세대를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여 농지지원을 강화합니다.

| 참고 | 농지은행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농지지원 강화

농지임대수탁사업 2030세대 농지지원 강화

- 추진배경 2030세대 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강화 필요
- 주요내용 한국농어촌공사 수탁농지 임대 시 2030세대 최우선 지원
- 시행일 2017년 5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구제역·고병원성 시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에 출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은 있었으나 입국 신고 의무가 없었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법적 실효성이 부족했습니다.
- 2017년 6월 3일부터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입국 또는 출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출국 신고 위반 :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이상 50만원
 - * 입국 신고 위반 :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이상 5백만원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 추진배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의 출입국 신고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 강화
- 주요내용
 - ①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국하거나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 함
 - ②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6차산업 관련 행위제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산업과 (☎ 044-201-1582)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시설 제도’를 도입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 2017년 9월 22일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시설인 경우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도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인허가 의제제도를 확대(기존 24개 → 11개 인허가 추가)하여 사업 다각화 시 인허가 절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 신규 의제 인허가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등

아울러,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관리·감독, 사업정지, 원상복귀 등 사후관리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 농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입지규제 완화하여 6차산업 걸림돌 없앤다

농촌융복합시설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농촌지역의 다양한 입지 규제로 농업인 등의 사업 다각화 애로
- 주요내용 ① 생산관리지역 내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불가능 → 가능)
② 인허가 의제제도 확대(기존 24개 인허가 → 35개 인허가)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축산물이력제 이행 의무

| 농림축산식품부 | 방역총괄과 (☎ 044-201-2362, 236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도 2017년 6월 28일부터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축산물이력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난 2013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신설된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수제 가공품 뿐만 아니라 축산물이력제 적용품목인 식육과 포장육을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이력제 의무대상 영업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앞으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소비자에게 축산물이력제 적용품목인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포장지나 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식육판매업(정육점) 영업자와 동일하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78호)

축산물이력제 적용대상 영업자 확대

- 추진배경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설에 따른 축산물이력제 적용 영업자 정비
- 주요내용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의무 대상자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추가
- 종전 의무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자
- 의무대상 확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 |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6)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위해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이 개선되어
2017년 7월 1일부터 의무 적용 됩니다.

■ 수입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국가명을 3개국 이상 표시하고, 버섯류의 표시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 농수산물 가공품 원산지표시 : 수입산 → 외국산(○○국, ○○국, ○○국 등)

* 버섯류 원산지표시 : 버섯(국내산) → 버섯[국내산(접종·배양:○○국)]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방지를 위해 처벌이 강화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관리의무가 추가됩니다.

■ 원산지표시 거짓표시로 적발되거나 2회 이상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위반자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원산지 거짓표시로 처벌을 받고 5년이내에 다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판매의뢰자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 및 위반자 처벌 강화

• 추진배경 공정한 거래 유도 및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원산지 표시제 강화

• 주요내용

• 시행일

① 농수산물 가공품 및 버섯류 표시방법 개선 - 가공품 : 수입산 → 외국산(○○국, ○○국, ○○국 등) - 버섯류 : 버섯(국내산) → 버섯(국내산(접종·배양 : ○○국))	2017년 7월 1일(의무시행)
② 원산지표시 위반자 교육의무 부과	2017년 5월 30일
③ 재범자 형량하한제 시행	2017년 6월 3일
④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리의무 부과	2017년 12월 3일

직거래농산물 지원 확대 및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044-201-2285)

「제1차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17~'21년)」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인은 제값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경로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해집니다.

- 농업인이 수확·포장·진열·가격결정까지 직접 담당하는 로컬푸드직매장,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직거래장터,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쇼핑 등 다양한 유통경로들에 대한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소비자들에게는 합리적인 선택기회를 제공하고,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관리 및 홍보를 통해 바람직한 직거래 사업모델을 제시하여 직거래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활성화 기본계획 및 인증제 개요

- 추진배경
농산물 직거래법('16.6.23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조성을 목표로 직거래 등 신(新)유통경로 정착,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활성화기반 조성을 위한 15개 과제 추진
② 우수한 직거래 사업장에 대해 인증제 추진
- 시행일
2017년 10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 정비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 044-200-185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을 ‘사용허가’로, ‘사용경비’를 ‘사용료’로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 지금까지는 저수지·구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사용경비’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 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용허가’와 ‘사용료’로 용어를 변경·정비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제도 이용의 편의성과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현행정보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추진배경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과 이해도 제고
- 주요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 정비
 - 사용승인 → 사용허가
 - 사용경비 → 사용료
-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련, 기등록 재학생에 대한 용자 제한 완화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복지여성과 (☎ 044-201-1578)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이하 학자금) 지원과 관련, 기등록한 재학생에 대한 학자금 용자 제한을 완화하여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기등록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에 대해서만 학자금 용자를 허용하였고 기등록 재학생에 대해서는 용자를 제한해 왔으나,
 - 2017년 2학기부터 대학의 등록금 대체 지원 등의 사유로 기등록한 재학생에 대해서도 이에 대해 대학측 소명이 있을 경우 학자금 용자 지원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은 무이자 대출사업으로 용자 제한 완화에 따라 농촌출신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참고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기등록 재학생 용자 제한 완화

- 추진배경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기등록한 재학생에 대해서도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 제한을 완화
- 주요내용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지원 관련, 2017년 2학기부터 기등록한 재학생에 대해서도 학자금 용자 제한을 완화하여 대학생 이자부담 해소 등 학자금 부담을 완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사업은 열악한 농촌교육여건을 감안, 무이자로 지원
- 시행일
2017년 8월

건강한식 서포터즈 모집

| 농림축산식품부 | 외식산업진흥과 (☎ 044-201-2152)

'12년부터 국내 대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던 건강한 식원정대를 확대·개편하여,

- 올해부터는 지역, 나이, 학력, 국적, 직업 등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오프라인에서 추진하던 한식홍보를 이메일·SNS를 활용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 핵심 역할을 건강한식서포터즈가 맡게 됩니다.
- 또한, 서포터즈 참여 신청은 한식재단 홈페이지(www.hansik.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거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한식재단 이메일(kff_kfe@naver.com)로 제출하면 되며, 모집기간 이후에도 연중 수시로 참여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세계인에게 한식의 매력을 함께 알려요

건강한식 서포터즈 모집

- 추진배경 국내외 온라인 한식홍보를 위한 건강한식 서포터즈 운영
- 주요내용
 - ① (활동내용) 개인 SNS를 통한 한식 콘텐츠 온라인 홍보, 한식정책 아이디어 제안, 한식정책 현장체험 등
 - ② (혜택) 식품·외식기업 연계 취·창업 프로그램 지원, 국내외 한식홍보 현장체험 지원, 한식부문 일자리·통계·최근이슈 등 정보제공, 장관상 시상 등
- 시행일 2017년 하반기 수시모집

농림축산식품부

비닐하우스 등 원예·특작시설에 대한 내재해형 규격의 등록 및 운영방안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044-201-2258)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버섯재배사 내재해형 규격을 신규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지금까지는 내재해형 규격을 새로이 개발하는 경우 지자체(시·군·자치구)를 통해 농식품부에 내재해형 규격 심사를 신청하면 농식품부에서 농촌진흥청에 규격 검토를 의뢰한 후 검토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체제였습니다.
- 2017년 7월부터는 신규 규격 개발 시 직접 농촌진흥청에 내재해형 규격 검토 신청서와 구비 서류(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과거와 달리 이후의 심사절차와 일정이 문서 등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내재해형 규격 등록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종전과 달리 내재해형 규격의 심사 시에는 학계·연구계 전문가, 온실 설계·시공 전문가 등이 심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더욱 공정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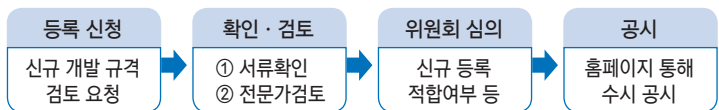
내재해형 규격 등록·운영 주요내용

• 추진배경 내재해형 규격의 신규 등록 및 해석 등에 대한 투명성·효율성 증진

• 주요내용

규격의 등록기준 및 절차

- ① 적용대상 : 비닐하우스시설, 인삼재배시설, 간이버섯재배사 등
- ② 처리기관 : 농촌진흥청
- ③ 처리절차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도시농업 관련 국가전문자격(도시농업관리사)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7)

도시농업 관련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업관리사”가 도입됩니다.

- ‘도시농업관리사’는 민간분야에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자격에 대한 공신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로의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1종을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습니다.
- 또한, 본 제도의 특례조항에 따라 법 시행일인 9월 22일 이전에 자격취득요건을 갖춘 사람도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는 제도시행 이전에 이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법 시행 후 같은 자격조건을 또 갖춰야 하는 것을 방지 하는 차원의 조치이며, 대국민 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참고 |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모두가 도시농부(<http://www.modunong.or.kr>)”

도시농업 관리사 도입

- 추진배경
민간분야에서 제각각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자격에 대한 객관적인 공신력과 전문성 확보
- 주요내용 (자격요건)
 - ①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1종을 갖추고
 - ②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

* 농화학, 시설원예, 유기농업, 종자, 화훼장식, 식물보호, 조경 또는 자연생태 복원 분야의 기능사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

**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이론 40, 실습 40시간)’ 교육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 농림축산식품부 | 종자생명산업과 (☎ 044-201-2479)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시행 됩니다.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16시간)을 이수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①공통기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②작물별 개별기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이상, 식량 250㎡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구비 등

**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등

■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며,

■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농업인의 피해와 분쟁을 줄이고, 육묘시장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종자산업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추진배경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육묘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①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 : 일정한 시설+16시간 이상의 육묘교육과정 이수
 - ②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 묘 판매 시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
 - ③ 육묘로 인한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 시행일 2017년 12월 28일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주산지협의회 제도 신설

| 농림축산식품부 | 유통정책과 (☎ 044-201-2219)

무·배추 등 농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참여하여 품목별 정보를 교환하고, 사전적 면적조절 등 자율적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주산지협의회 제도가 신설됩니다.

- 무, 배추 등 국민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작물의 경우,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성이 높아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물가안정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품목은 지역단위에서는 생산자, 생산자단체,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산지협의회를 운영하고, 중앙단위에서는 품목별 주산지협의회를 운영하여 생산자 스스로 자율적이고 사전적인 수급 조절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산지협의회에서 생산자들 간 정보 교환을 통해 농산물 품질향상 및 수출촉진 등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산지협의회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해 품목별 주산지협의회 제도 신설
- 주요내용 ① 주산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
②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신설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국내 식물병해충 발생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

- 전파 위험성이 큰 병해충이 유입된 경우에도 해당 병해충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경우, 농촌진흥청, 검역본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규제병해충 : 식물방역법 상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식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해충
 - * 방제대상 병해충 : ‘예찰·방제대책 협의회(농촌진흥청 주관)’에서 방제대상으로 결정한 병해충
- 식물의 재배자가 신고대상 병해충 발생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내용

- 추진배경 국내 병해충 발생대응체계 강화
- 주요내용 식물의 재배자에게 병해충 발생신고 의무 부과
(현행) 신고의무 없음
(개선)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
(신고대상) 분명하지 않은 병해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대상 병해충 발견 시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외국으로부터 유해한 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기존 검역대상 외에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물품(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이는 고위험 흰개미* 등 일부 병해충이 현행법상 검역대상(식물 등)이 아닌 ‘목재가구’나 ‘폐지’ 등을 통해 유입될 우려가 있어 수입검역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농업·입업 등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지중흰개미, 건재흰개미를 의미하며 주로 목재나 가구 내부에 서식처를 확보하여 번식

■ 병해충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에는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

‘병해충 전염 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 추진배경 유해 식물병해충 유입차단 체계 보완
- 주요내용
 - ① 식물검역관은 국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병해충전염우려물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도록 함
(현행) 식물 등 기존검역물품
(개선) 기존검역물품 + 병해충전염우려물품(이사물품, 목재가구류, 폐지, 침목 등)
 - ② 병해충전염우려물품의 검역결과 규제병해충 등이 검출될 경우에는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우편물 외에 택배(탁송품)를 통한 식물류의 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탁송품에 대해서도 우편물과 유사한 수준으로 검역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특급탁송품은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수입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12) 13천건 → ('13) 15천건 → ('14) 405천건 → ('15) 602천건

- 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통관을 방지하고자, 현행 탁송품의 통관체계를 고려하여 탁송업자를 수입검역신고 주체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2017년 12월 3일부터 탁송품 운송업자는 식물 등 의심 물품 발견 시 이를 검역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 **추진배경** 유해 식물병해충 유입차단 체계 보완
- **주요내용**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된 탁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현행) 수입자가 직접 검역신청을 하거나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검역신청
(개선) 해당 탁송품을 접수한 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기관에 고지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식물검역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역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식물검역 신고 대행자 등록 제도가 도입됩니다.

- 지금까지는 식물검역대상물품(수입되는 식물 및 그 포장·용기)에 대한 검역신고 의무만 규정하고 그 검역신고의 대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관세사 등에게 식물검역 신고 업무를 위탁·대행하여 처리하였으나,
- 2017년부터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등록한 신고대행자’에게 식물검역 신고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적절한 대행 등 검역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 추진배경 수입식물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 주요내용
 - 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등록된 자’에게 검역신고를 대행하게 함
 - ②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식물검역기관의장에게 등록
 - ③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대행자가 관련법규 위반 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함
(현행) 검역대행자 자격요건 없음
(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된 자에게만 검역대행 자격 부여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격리재배 대상식물 중 묘목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원산지·품목명·수입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 꼬리표(tag)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합니다.

* 격리재배 대상식물 : 묘목·종자 등의 식물은 아직 잎이나 꽃 등이 나지 않아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의 부착유무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정밀검사를 위한 격리재배를 실시함

- 이는 그간 소유자들이 격리재배중인 묘목들을 고의적으로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 부착된 꼬리표(tag)를 고의로 위·변조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 추진배경 수입식물 검역관련 부정행위 방지
- 주요내용 ① 격리재배대상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묘목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
 ② 누구든지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조·변조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됨 (현행) 꼬리표 부착의무 없음
 (개선) 묘목의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 단위별로 꼬리표 부착 의무 신설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종자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해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지 식물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됩니다.

- 지금까지는 수입금지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경우를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및 국제박람회용으로 제한하였으나,
-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하고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에는 수입이 허용됩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 **추진배경** 민원편의 확대 및 규제완화
- **주요내용** 금지품 중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만 수입하는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전파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일정한 요건 및 기간 등 특별관리 조건으로 국내 반입을 허용
(현행) 수입금지품 수입허용 조건 :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확보용, 국제박람회용 (개선) 특별 관리를 통한 재수출용 포함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식물류 수출입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출 허용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2017년 12월 3일부터 식물류의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외에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IPPC : 식물병해충의 유입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해 195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전체 회원국은 177개국이며 우리나라는 1953년 가입

** 2011년부터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른 국제기준(ISPM No12)에서 전자문서 형태의 식물검역증명서를 허용하고 있으며, '14년 3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표준서식이 제정(ISPM No12 appendix 1 신설) 됨

- 이로 인해 현행 식물검역증명서(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원본의 분실·파손·도착지연으로 인한 통관 지연, 원본 미보완 시 폐기·반송 처분으로 인한 민원불편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고, -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사용으로 검역증명서 위조 등 위법행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전자식물검역 증명서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민원편의 증대 및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여야 함
 ② 검역증명서는 수출국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서식에 따른 것이어야 함
 (현행) 종이 문서인 '식물검역증명서'만 인정
 (개선) '전자식물검역증명서'도 인정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 검역정책과 (☎ 044-201-2074)

민간연구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수출입식물의 검역시 정밀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는 검역과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밀검사업무를 국가검역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담하고 있으나,
 - 검사업무 수행기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연구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바이러스 등 5개 항목에 대해 실험실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로써 현장검역 인력 부족난을 완화하고 검사기간 단축 등으로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민원편의 증대 및 검역업무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 ① 수출입식물 검역과정에서 바이러스 검사, 세균검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현행) 정밀검역업무 수행 : 농림축산검역본부
(개선) 농림축산검역본부 + 식물병해충전문검사기관
 - ②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설·설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③ 전문검사기관이 관련 법규 위반 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함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보호대상해양생물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044-200-5315)

'17년 6월 28일부터 매매를 목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 채취, 유통 및 보관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우리바다에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거나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중 지정

■ 매매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로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의 처벌 강화로 개체수 감소 위협요인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 대상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추진배경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불법행위 예방 및 방지
- 주요내용 ①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으로 포획·채취·훼손한 자 또는 포획·훼손을 위해 폭발물·그물·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전류를 사용한 자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불법으로 이식·가공·유통·보관한 자
 ② 가중처벌내용 :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 폐지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044-200-5315)

'17년 6월 28일부터 현재 20억원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상한액이 폐지됩니다.

*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 그동안 개발사업의 규모와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가 비례관계에 있으나 부과 상한액이 20억원에 그쳐 해양생태계를 대규모로 훼손하는 사업자가 상한액 적용 수혜자가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따라서 부과 상한액을 폐지하여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훼손 규모에 따라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하여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개요>

- ① (부과대상) 공유수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10만㎡ 이상의 탐사·채굴, 50만㎡ 이상의 바다골재 채취, 바다골재 채취단지
 - * 국방·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부과
- ② (사용용도) 해양생태계·생물종의 보전 및 복원사업, 해양생태계 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 폐지

- 추진배경 원인자부담 성격의 부담금에 대한 부과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현행)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 : 20억원
(개선) 부과 상한액 폐지
-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행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044-200-5315)

'17년 6월 28일부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행이 가능해집니다.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사업자가 대체생태계의 조성 및 해양생태계 복원 등을 시행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반환할 수 있음

- 현재는 협력금을 납부한 자만이 반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반환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따라서 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도 반환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반환사업의 대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해양생태계 복원 및 보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 사업의 대행

- **추진배경**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의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현행) 협력금을 납부한 자만이 반환사업 시행 가능
(개선) 협력금을 납부한 자 외에 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도 반환사업의 시행이 가능
※ 반환사업 사업시행 절차



-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법정 보호생물의 조업 중 혼획방지

| 해양수산부 | 해양생태과 (☎ 044-200-5315)

'17년 6월 28일부터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과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조업 중에 혼획(混獲)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혼획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해양포유동물 : 물범, 물개, 고래 등 41종 지정(해양생태계법 제2조) 보호대상해양생물 : 77종 지정
(해양생태계법 제2조)

- 조업 과정에서 어구에 의해 혼획·사망하는 해양포유동물과 멸종위기 해양생물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법을 개정하여 혼획 방지 노력을 전 국민의 책무로 명문화했습니다.
- 정부는 혼획방지를 위한 필요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등 법정 보호종의 개체수 감소 위협요인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법정 보호생물의 혼획방지

- 추진배경 조업 과정 중 어구에 의해 혼획·사망하는 법정 보호생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
- 주요내용
 - ①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생물이 조업 중 혼획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혼획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시행일 2017년 6월 28일

수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지원센터 확대 운영

|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 044-200-5481)

수산물 수출업체의 판로 개척, 수출 애로사항 등을 수출국 현지에서 지원하기 위한 수출지원센터가 확대, 운영됩니다.

- 지금까지는 수출지원센터가 중국에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2017년 하반기부터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에 추가 설치되어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법률, 통역지원, 통관 지원 등에 대한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 또한, 수출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은 입주보증금(100만원)과 통신료 등 소정의 실비만 부담하면 사무공간, 회의실, 사무기기 등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수출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출지원센터 확대 계획

- **추진배경**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 ① 수출지원센터 확대
 - (~'17.6) 중국(상해, 청도, 북경)에만 설치, 운영
 - ('17.7~) 미국(LA), 일본(동경), 대만(까오슝), 베트남(호치민) 추가 설치
 - ② 주요 서비스
 - 수출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사무공간, 회의실, 사무기기, 법률·통역, 통관 지원 등 서비스 제공(호치민) 추가 설치
 - ③ 입주기업 자부담
 - 입주보증금(100만원), 통신료 등 실비
- **시행일** 2017년 7~8월
- **관련 국정과제**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수출지원센터 확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044-200-5468)

양식어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4품목에서 27품목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 (대상품목) 2017년 상반기 1개 품목을 상품화하였으며, '17.6월까지 2품목을 신규 도입하여 대상 품목을 27개로 확대합니다.

* 2017년 도입품목 : 터봇, 메기, 향어 / 총 27개 품목

| 참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보도자료 >

2017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추진배경 현장 수요에 부응한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주요내용 대상품목 확대 (24개 품목 → 27개 품목, +3개 품목)
- 시행일 2017년 6월 1일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어업관리 역량 강화

| 해양수산부 | 지도교섭과 (☎ 044-200-5562)

'17년 6월부터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어업관리사무소를 남해어업관리단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 기존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관리하던 전남 육역 일부(진도~여수)를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해역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서·남해단이 전남육역을 나누어 관할함에 따른 전남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수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어업관리 조직역량 강화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여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어업관리 역량 강화

- 추진배경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여 수산자원과 어업인 권익 보호
- 주요내용 ① 관할 해역 조정
 - 관할해역 범위에 전남 일부 육역을 포함하되, 향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 추진
 - 전남 어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장사무소 설치(여수)
 ② 지도선 및 단속인력
 ③ 조직 안정화를 위해 지도선 500톤급 4척과 인력 60명 추가 배치
- 시행일 2017년 6월 20일

내수면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신설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044-200-5637)

'17년 7월 1일부터 뱀장어의 포획금지 기간 및 체장이 시행되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 자원의 번식을 보호하게 됩니다.

*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17.1.10)

-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는 포획이 금지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며, 수산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cm 미만은 금지 기간 동안에도 잡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역과 기간에 관계없이 전 내수면에서 몸길이가 15cm 이상~45cm 이하의 뱀장어는 포획할 수 없습니다.

| 참고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보도자료 > 뱀장어, 몸에 좋다고 아무 때나 잡지 마세요!

내수면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신설

- 추진배경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뱀장어의 번식·보호
- 주요내용 ①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신설
- 10.1 ~ 3.31.
(다만, 댐·호소는 제외하고, 15cm 미만은 금지기간에도 포획 가능)
② 뱀장어 포획 금지체장 신설
- 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 가능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042-481-4141)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카드납부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만 납부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지관리법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카드납부 가능

- 추진배경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방법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납부 가능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이력제도 도입

|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7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 훈증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훈증더미의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의 기록관리가 의무화되는 훈증더미 사후이력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 과학적인 조사·연구와 어업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공포('17.1.10)

- 그동안 일부 훈증더미의 경우 필수 표기사항이 누락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매개충을 유인하여 인근지역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필수 기재사항의 기록관리가 의무화되고, 상위 기관으로의 이력관리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 후 사후이력제도 도입

- 추진배경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사후관리 강화로 방제실효성 극대화
- 주요내용
 - 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 훈증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 작업이 완료되면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의 기록·관리를 의무화 함
 - ②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훈증처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방제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 완화

| 산림청 | 백두대간보전팀 (☎ 042-481-8814)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허용행위를 완화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의 보전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정비 근거를 마련하여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등산객 증가에 따른 백두대간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서만 설치를 허용하던 기지국을 핵심구역에서도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등산객의 조난·안전사고, 산불 등 재난 신고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의 초지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축산업의 6차 산업화 모델 구축 및 산지생태축산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 산림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제·개정법령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허용 행위 완화

- 추진배경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주민과 공존하는 미래 유산으로 지속 가능하게 보전·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정비 허용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무선국 중 기지국 설치 허용
 ③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초지)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설치 허용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토석채취사업장내 외부토석 반입의 제한적 허용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042-481-4141)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와 산지전용허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토석 반입은 복구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아,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하지만,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과정에서 나온 토석과 도로·철도·궤도·운하·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갭도를 파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버리지 않고 토석채취사업장으로 반입하여 골재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지관리법

토석채취사업장내 외부토석 제한적 반입허용

- 추진배경 버려지던 토석자원의 활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토석채취사업장에 외부토석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복구를 위한 경우와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반입하여 자원으로 활용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산림청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 금지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042-481-4141)

토석채취사업장에 배치되는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한 곳의 사업장에만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책임성과 안전성을 강화 했습니다.

- 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채석신고·토석매입 및 무상 양여를 받은 자는 토석채취사업장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 현장관리업무담당자 배치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여러 곳의 토석채취사업장을 혼자서 관리하는 등 안전관리와 산림피해 방지에 취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러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토석채취사업장에 겸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산림피해 방지 및 재해 예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지관리법

토석채취사업장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 금지

- 추진배경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 예방 강화
- 주요내용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둘 이상의 사업장 업무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지대상 확대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246)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예정지에 대한 고지대상을 확대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법에서는 산림보호구역 지정 시 예정지를 공고하고, 고지대상을 토지소유자와 자치단체장에게만 알리도록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토지를 대부(사용허가)받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 또는 광업권 설정자 등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알리도록 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재산권 권리보호가 기대됩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보호법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 확대

- 추진배경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지대상을 확대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해당 산림에 대해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국유림 및 공유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함
②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권이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 시행일
2017년 7월

산림청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위탁 관리 시행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042-481-420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목재문화체험장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조성된 목재문화체험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목재문화체험장은 2003년부터 전국 40개소에 운영(19개소) 및 조성(21개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이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질 높은 목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참고 | 산림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법령

목재문화체험장 전문기관 위탁 관리

- 추진배경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운영 및 질 높은 목재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주요내용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
- 시행일 2017년 9월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4208)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의 품질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생산적합성조사 검사기준과 품질검사 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기간을 전문인증기관이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으나, 연장기간을 20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 * 특별관리임산물 :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임축법제2조의3의2, 현재 산양삼 1개 품목 지정)
- 또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적합성조사 검사기준을 품질검사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생산과정 확인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 생산적합성조사기준 확대(65 → 86개), 생산과정확인(2 → 5개월)
- 이를 통해 임산물 재배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청정 임산물을 국민들에게 지속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 추진배경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개선으로 국민편익 증진
- 주요내용 전문기관이 품질검사 신청을 받고 30일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임업및산촌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 5의 ②(품질관리)개정
- 시행일 2017년 9월 22일

09

연구개발

미래창조과학부



국가R&D 표준서식 간소화

| 미래창조과학부 | 연구제도혁신과 (☎ 02-2110-2735)

연구현장에서 대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줄여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R&D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복잡한 연구서식의 간소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과거 70~100쪽 내외로 작성하던 연구개발계획서를 출연금 연 5억원 이하 과제는 5쪽 이내, 5억원 초과 과제는 10쪽 내외로 작성토록 작성 항목을 대폭 간소화 하였습니다.
- 또한 연구계획을 자유롭게 기술하는 에세이방식 연구개발계획서를 도입하고, 최종결과보고서 역시 해외과학기술정보 항목을 삭제 하는 등 기존 12개 작성 항목을 5개로 간소화하여 연구 내용 중심으로 간결히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 참고 |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보도자료 > 연구서식 대폭 간소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소관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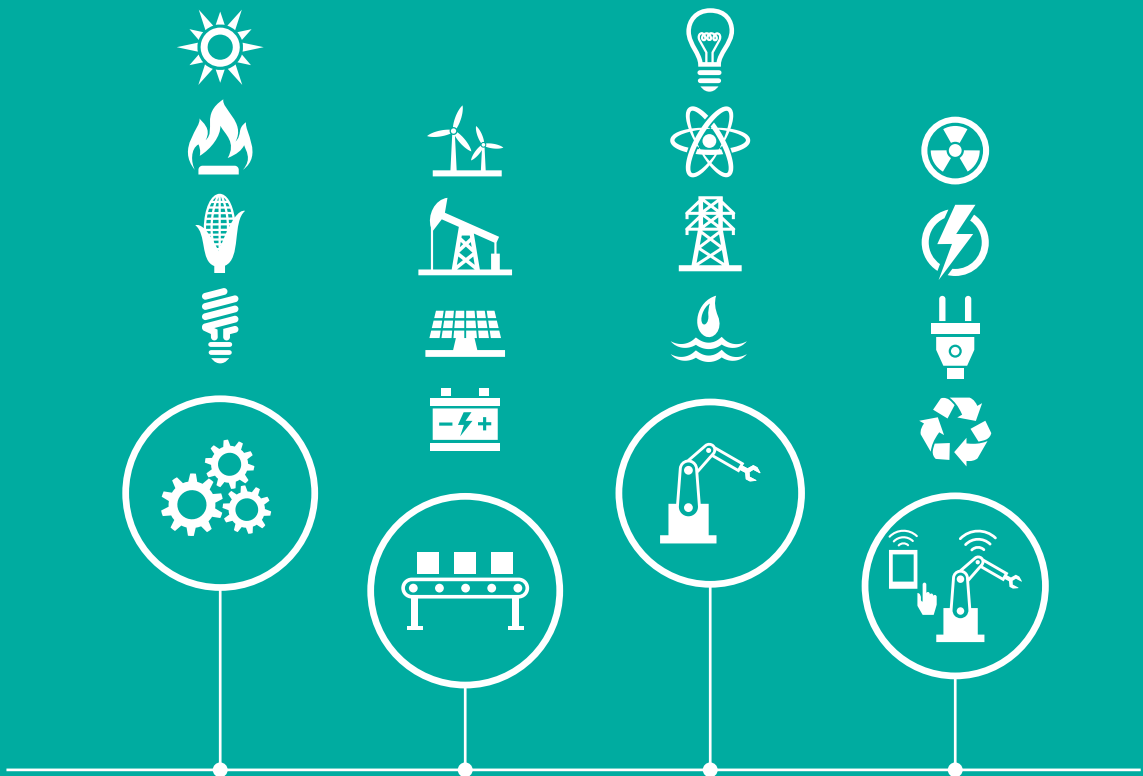
R&D표준 서식 간소화

- 추진배경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R&D 성과 제고
- 주요내용
 - ①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축소
(정부출연금 연 5억원 이하는 연구내용 5쪽 이내, 10억원 초과 10쪽 내외로 분량 제한 원칙)
 - ② 아이디어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 ③ 연차실적보고 시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표 삭제
 - ④ 연구내용 중심으로 작성토록 최종보고서 작성항목 축소(12개 → 5개)
- 시행일 2017년 5월 23일

10

산업 · 에너지 · 자원

산업통상자원부 | 관세청 | 중소기업청



1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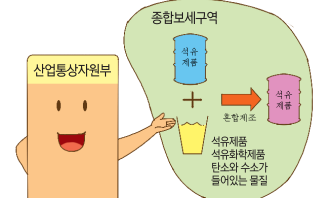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허용

시행일 : 2017년 10월 19일

Before

신 설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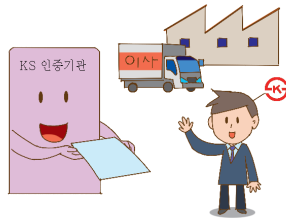
종합보세구역 내 혼합 석유제품 제조 허용

2 산업통상자원부

KS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

시행일 : 2017년 6월 3일

Before



사업장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

After

빠른 심사를 통해 KS인증의 신뢰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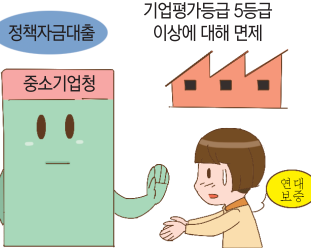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 이전심사로 심사주기 단축

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시행일 : 2017년 8월

Before



After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산업과 (☎ 044-203-5215)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해 2017년 10월 19일부터 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국제석유거래업」이 신설됩니다.

- 국제석유거래업은 내·외국인(법인 포함)을 불문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하여 영업할 수 있으며, 보세구역 내에 석유제품 저장시설을 보유 또는 임대하여야 합니다.

국제석유거래업자는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석유제품 등을 혼합하여 석유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되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의 석유제품 혼합제조는 종전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금지 규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동북아오일허브 프로젝트 추진 계획

- 추진배경 동북아 오일허브(여수, 울산) 활성화 및 국제석유거래 규제 개선
- 주요내용
 - ①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
 - 제출서류 : 신고서 및 사업계획서, 보세구역내 석유제품 저장시설 보유현황
 - ②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허용
 - 혼합제조 방법 : 석유제품+석유제품,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석유제품+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
 -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 혼합제조 시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KS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 | 표준정책과 (☎ 043-870-5346)

KS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빠른 심사를 통해 KS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2017년 6월부터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심사가 정기심사에서 이전심사로 변경됩니다.
- 지금까지 제조공장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 앞으로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이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예산·법령 > 최근개정법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260호)

KS인증 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심사 강화

- 추진배경 KS인증 기업의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심사 강화로 KS인증의 신뢰성 확보
- 주요내용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심사 주기 단축(3개월 → 45일)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고압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제도 정비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5, 5132)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제도를 보완하여 고압가스·도시가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안전관리자의 여행·질병에 따른 직무대행 시 대행가능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원 미선임 시설의 직무대행자 기준이 없었습니다.
 - 2017년 6월 3일부터 여행·질병 등에 따른 안전관리자 직무대행 가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 안전관리원 미선임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직무대행자는 가스안전관리 지식이 있는 해당 사업소의 가스관련 업무 종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예산·법령 > 최근 개정법령 > 시행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제도 보완 사항

- 추진배경 고압가스·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주요내용 ① 여행·질병 등 일시적 직무 수행 불가 시 직무대행기간(미규정 → 30일 이내)
② 직무대행자 자격(미규정 → 가스안전관리 지식이 있는 가스관련 업무 종사자)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석유화학공장 간 나프타부생가스 거래관련 규제완화

| 산업통상자원부 | 가스산업과 (☎ 044-203-5237)

석유화학공장간의 나프타부생가스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 나프타부생가스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 지금까지 석유화학공장간에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사업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월 공급량 합계가 1만 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직접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 금년 6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나프타부생가스 제조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도 1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나프타부생가스도 전용배관을 통해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최근개정법령>법 및 시행규칙 > 도시가스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석유화학공장간 나프타부생가스 거래 활성화

- 추진배경 나프타부생가스 관련 규제 개선
- 주요내용 ①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 허가 제외
② 석유화학공장간 전용배관을 통한 나프타부생가스 거래시 공급량 한도 철폐
- 시행일 2017년 6월 3일

보일러, 압력용기 등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제조검사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수요관리과 (☎ 044-203-5383)

고온·고압 검사대상기기(산업용 보일러, 압력용기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제조되어 수입되는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제조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검사대상기기는 제작단계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의 제조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경우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제조검사 증빙서류로 이를 갈음하여 국내 기준에 따른 안전성 확인이 곤란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2017년 12월 3일부터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제조검사를 직접 실시하고 불합격한 기기는 수입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 실시로 검사대상기기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검사대상기기가 설치된 산업체와 다중이용시설(호텔, 병원,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수입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 제도 안내

- **추진배경**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2(수입검사대상기기의 검사)
* 16.12.2 법 개정 및 공포
- **주요내용**
 - ① 대상기기 : 보일러, 압력용기, 철금속가열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 ② 검사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③ 적용대상
 - 국내 : 국내 수입업자(제조검사에 합격한 기기만 수입 가능)
 - 해외 : 해외 제조업자(한국에너지공단의 제조검사에 합격한 기기만 수출 가능)

* 제조검사 수검자는 국내 수입업자가 아닌 해외 제조업자
-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활동 강화

| 관세청 | 국제협력팀(☎ 042-481-7971)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우리 수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수행으로 우리기업의 통상현안을 적기에 해소·지원할 계획입니다.

해외 통관애로 주요 사례

- (중국) 화장품 용기에 대한 품목분류 이견으로 연간 20억원의 피해 예상
- (폴란드) OLED 부품 철도운송 통관 지연으로 약 420억원의 피해 예상
- (인도) CEPA 특혜세율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원본)의 요구 및 사후환급 거부(\$37,900)

* 해외통관애로 접수 건수 : 407건('14) → 444건('15) → 461건('16)

- 100일 작전의 추진전략은 ① 문제점 파악 및 전담팀 구성(인지·예방) ② 통관애로 해소 지원(직접 대응) ③ 제도·시스템 개선(대응능력 저변 확대)이며, 이를 통해 단계적 통관장벽 해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 기동팀을 파견하여 중소·중견 기업 중심의 현장지원을 강화한다.

해외 통관장벽 타파 주요내용

- 추진배경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비관세장벽으로 통관애로를 겪는 사례 증가
- 주요내용 ① 단계적 통관장벽 해소체계 구축
 ② 현장 기동팀 파견
- 시행일 2017년 6월~10월(잠정)

성실 수출업체 원상태 수출시 수입증빙내역 생략

| 관세청 | 통관기획과 (☎ 042-481-7802)

성실 수출기업의 원상태 수출신고시 수입신고번호(분증 포함)의 기재 생략을 통해 신속통관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원상태 수출신고의 경우, 수입할 당시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을 해야, 수출분 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 * 수입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는 수입신고필증, 상이한 경우 분할증명서(분증)
 - 수입 후 원상태수출 신고시까지 수입내역을 증빙하기가 시간적·물리적으로 곤란한 점을 개선하여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성실 수출기업의 물류관리·법규준수도를 고려하여 수출신고시 수입증빙내역 제출을 생략*하고, 환급신청시 증빙서류 심사로 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 수출신고서 항목 ④0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오류통보 없음

원상태 수출시 성실 수출업체 서류 간소화

- 추진배경 성실수출기업에 원상태 수출로 환급신청시 수입증빙내역의 생략으로 신속 통관 지원
- 주요내용 성실수출기업이 원상태 수출시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환급신청시 증빙서류 심사로 절차 개선
- 시행일 2017년 10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

| 관세청 | 법인심사과 (☎ 042-481-7858)

민원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할 계획입니다.

- 현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 업무담당자에 따라 서면과 전자문서 제출을 중복으로 요청하거나 둘 중 하나만 요청하는 등 집행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 2017년 하반기부터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방법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 세관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증빙서류와 별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

- 추진배경 민원인의 혼란 및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방지
- 주요내용 ①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
② 세관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시행일 2017년 7월 1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중소기업청 | 기업금융과 (☎ 042-481-4375)

'17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시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면제 됩니다.

- 지금까지 정책자금 지원 시 법인기업인 경우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상에 대해 면제(4등급 이상 자동면제, 5등급은 7년 미만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0.5% 조건부 면제)하여왔으나,
- 하반기부터는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연대보증 입보가 전면 면제 됩니다.
 - 이는 신규 창업기업의 사업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업 실패 이후에도 재도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참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정책자금용자 > 용자절차 > 연대보증인 입보 기준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 추진배경 신정부 공약사항인 '연대보증 폐지' 이행
- 주요내용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입보 면제
- 시행일 2017년 8월

11

환경

환경부





1

환경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시행일 : 2017년 8월 9일

Before

페렴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



After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특별구제계정의 지원 가능



2

환경부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 및 인증 위반 제재 강화

시행일 : 2017년 9월 1일

Before



After

2017년 9월부터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시행



2017년 12월 28일부터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선

- 과징금 부과율(매출액 대비) : 현행 3% → 5%
- 부과 상한액(차종당) : 현행 100억원 → 500억원

3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 추진

시행일 : 2017년 7월말

Before

사업장 환경오염, 화학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는 심각하나,



After

2017년 7월 말부터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4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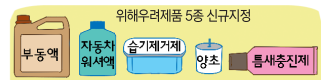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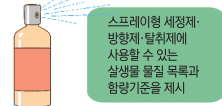
시행일 : 2017년 7월

Before

신설

After

살생물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 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044-201-6762)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 지금까지는 폐섬유화 등 특이성이 인정되는 질환만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의료비·간병비·생활자금 등의 정부 지원을 추진해왔습니다.
 - '17.8월부터는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사업자분담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또한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하게 되면 긴급 의료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

- 추진배경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
- 주요내용
 - ① 정부 구제급여 이외 특별구제계정 지원
 - (1-2단계 피해자) 구제급여 지원(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3-4단계 피해자) 사업자분담금 1,250억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 지원 가능
 - ※ 특별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할 경우 긴급 의료지원
- 시행일 2017년 8월 9일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시행 및 인증 위반 제재 강화

| 환경부 | 교통환경과 ☎ 044-201-6924

경유차에 대해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검사하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 '17.9월부터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중·소형 경유차는 실내시험(차대검사)과 실도로 조건의 배출허용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합니다.

적용 대상	적용 기준
·'17.9.1. 이후 인증을 받거나 '19.9.1. 이후 출고 차량	실내 인증기준의 2.1배 이하
·'20.1.1. 이후 인증을 받거나 '21.1.1. 이후 출고 차량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

* 대형 경유차는 운행 중인 차량의 결함확인검사 시 실도로 조건 배출기준 既 적용 중('16.1.~)

-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이 시행되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하여 도심대기질 개선은 물론 미세먼지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하는 자동차제작(수입)사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되어,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3% → 5%로 상향되며,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0억원 →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경유차 실도로 조건 기준 시행 및 인증 위반 제재 강화

- 추진배경
경유차 미세먼지 감축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주요내용
 - ①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적용
 - 1단계 :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기준의 2.1배 이하 ('17.9월~)
 - 2단계 : 실도로 조건에서 질소산화물(NOx)이 실내 인증기준의 1.5배 이하 ('20.1월~)
 - ②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위반한 자동차제작(수입)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개선
 - 과징금 부과율(매출액 대비) : 현행 3% → 개정 5%
 - 부과 상한액(차종당) : 현행 100억원 → 500억원
- 시행일
2017년 9월 1일(실도로 배출허용기준), 2017년 12월 28일(과징금)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 추진

| 환경부 | 환경보건관리과 (☎ 044-201-6813)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를 위해 '17.7월말부터 국가가 피해자들에 대한 先지원(원인자 後구상)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 사업장 환경오염, 화학사고 등으로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는 심각하나, 現 민사 배상체계로는 피해자가 승소하기 어렵고, 입증과 배상에 장기간·고비용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또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도입('16.1.)으로 구제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나, 지급요건이 엄격(원인자 미상·무자력 등)하여 현재까지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 다만, 환경오염피해자 중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법 제23조제2항제3호)를 근거로 구제급여의 先지급이 가능한 바,
 - 이에 대한 세부 기준·절차 등을 정비하여 '17.7월말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 추진 계획

- 추진배경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
- 주요내용
 - ① (지급요건) 환경오염피해 발생(정부의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오염원과 개인의 피해간 개별적 인과관계 인정), 환경오염 취약계층, 긴급구제의 필요성 등 종합 검토 후 지급
 - ② (지급유형)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개인의 건강 피해 중심의 급여로 한정
- 시행일 2017년 7월말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

| 환경부 |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28)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위해우려제품 품목을 확대하고, 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17.7월에 신설합니다.

- 부동산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사용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 목록과 함량기준을 제시하고, 목록에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합니다.

|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고시/훈령/예규 > 고시개정안 확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강화

- 추진배경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 ①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지정 (부동산액, 자동차용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 ②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 내 사용가능 살생물물질 목록 제시, 목록 외 살생물물질 사전검토 도입)
- 시행일 2017년 7월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저감

| 환경부 | 생활환경과 (☎ 044-201-6793)

도로소음을 근원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17.9월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 표시제」를 신규 도입합니다.

- 그간 지속적인 자동차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계 소음이 상당부분 저감되면서, 관련 규제가 없었던 타이어 소음이 교통소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정상주행 상태의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의 기여율 : 승용차 82~97%, 소형 상용차 94~96%, 중대형 상용차 45~81%

- 이에,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를 도입하여 허용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타이어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

'17.9월부터 8개 타이어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자율 표시제를 시범운영한 뒤, '19.1월부터는 모든 타이어 제조·수입사가 동 제도를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됩니다.

-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도로 소음의 1.3dB 저감효과(교통량 26% 감소효과, 일본 환경성 조사)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가 기대됩니다.

한편, '19년 제도가 의무화되면 타이어 제조·수입사에 의해 표시된 소음성능이 적정한지 해당 타이어의 실제 주행소음을 검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보도·해명자료 >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줄인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추진 계획

- 추진배경 타이어 소음에 따른 교통소음 저감으로 생활불편 해소
- 주요내용
 - ①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 의무화(자율시행 → 의무화)
 - 1단계 : ('17.9)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 자발적 시범운영
 - 2단계 : ('19.1) 모든 타이어 제조·수입업체 의무 시행
 - ② 소음도 표시 적정여부 관리 등 사후관리 병행
- 시행일 2017년 9월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

| 환경부 | 환경보건관리과 (☎ 044-201-6818)

석면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 편리성을 제고하고 피해 인정기간 단축을 위해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국립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에 55개소였으나, 대도시엔 편중되어 비도시지역 거주 피해자들의 지정병원 내원이 어려웠습니다.
- '17.8월부터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 (55개소 → 약 111개소)할 계획입니다.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

- 추진배경 석면피해자의 의료시설 접근 편리성 제고 및 피해 인정기간 단축
- 주요내용 석면 지정병원 확대
-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55개소 → 약 111개소)
- 시행일 2017년 7월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

| 환경부 | 토양지하수과 (☎ 044-201-7177)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에 오염부지의 특성상 '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정화곤란부지*)'를 '17.9월부터 추가할 예정입니다.

*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부지

■ 현재 위해성평가 대상은 ①오염된 국가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원인에 의한 오염부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화곤란부지가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어려운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 > 개정안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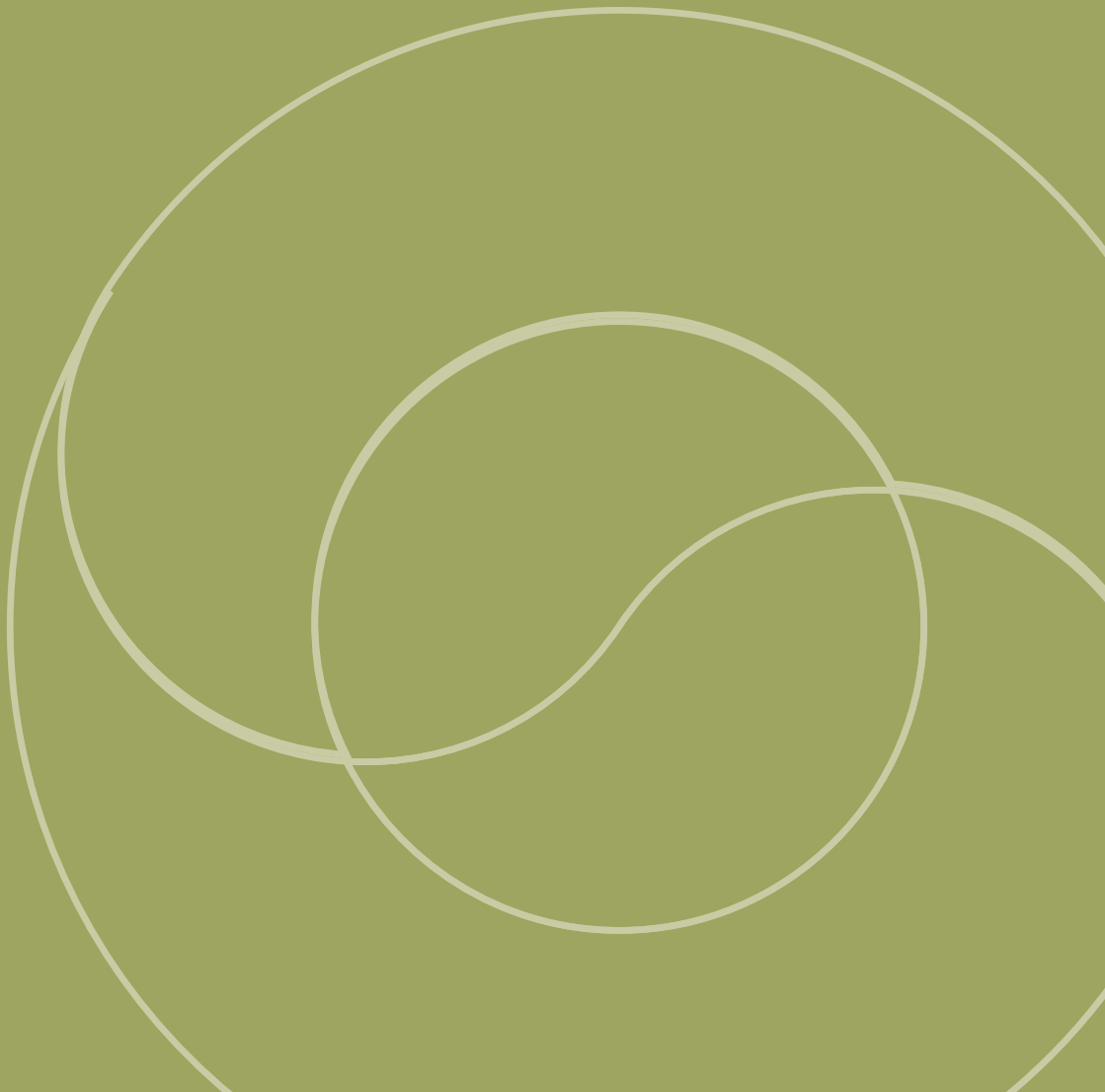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대상 확대

- 추진배경 오염토양의 합리적 관리로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주요내용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에 정화곤란부지를 추가
- 시행일 2017년 9월

12

보훈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무료 배송

| 국가보훈처 | 국립묘지정책과 (☎ 044-202-5551)

국가보훈처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국가유공자 사망 시에 증정하는 영구용 태극기 및 국립묘지안장용 유골함을 유족이 신청하면 퀵서비스 등으로 무료로 배송하도록 개선하였다.

- 지금까지는 유족이 직접 보훈관서 등을 방문하여 영구용 태극기(유골함)를 수령하거나 착불 퀵서비스 등으로 받아왔다.
- 영구용 태극기(유골함 포함)를 무료로 배송하는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연간 1만 2천여명의 국가유공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하게 보답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사망 시 지원을 강화할 나날 계획이다.

| 참고 |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열린마당 > 보훈처소식 > 보도자료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무료 배송

영구용 태극기 무료 배송 추진 계획

- 추진배경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영구용 태극기 및 국립묘지안장용 유골함 배송료를 유족 부담에서 국가 부담으로 개선
- 시행일 2017년 6월 26일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다들 잡니다

- 분양별 부정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적용 대상법,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분야별

(부처별)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01 금융·재정·조세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p>	<p>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업종 : 52개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p>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업종 : 52 → 57개 <p>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개 업종 추가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판매업, 중고 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p>☞(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6 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2016.12.28.),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2017.1.31.)</p>	<p>소득세법 시행령 (' 17. 7. 1.)</p> <hr/> <p>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4)</p>
<p>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p>	<p>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요건)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토지 등을 5년 이내 양도 (적용방법)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양도세 과세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적용배제) - 수용 등으로 양도시 -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시 - 증여한 배우자의 사망 <p>< 신 설 ></p>	<p>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요건) 좌 동 (적용방법) 좌 동 적용 배제 사유 추가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미적용 양도세액 보다 적은 경우 <p>☞(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p>	<p>소득세법 (' 17.7.1)</p> <hr/> <p>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p>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	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 공익법인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 공익법인 중 성실공익법인* : 10% * 외부회계감사, 결산서류 공시 등의 투명성 요건을 갖춘 공익 법인	• (좌 동)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 : 10% -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 5%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6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 17.7.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2)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조정 허용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신고가격 조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신고가격 조정 불인정	• 특수관계자간 거래시에도 신고가격 조정 가능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6년 세법 시행규칙 개정 보도자료	관세법 시행령 (' 17.7.1)
			기획재정부 관세협력과 (044-215-4453)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수입인지 종류 •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우표형 수입인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수입인지 종류 확대 • (좌 동) • (좌 동)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신설 -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시행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17.7.1)
			기획재정부 국고과 (044-215-5117)

국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경차 유류세 환급용 카드 발급 신용카드사 확대 및 범용카드 전환	신한카드 유류구매 전용카드	롯데·현대 카드 추가 범용카드(모든 물품 구매 가능) ☞(참고)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보도자료 > “경차유류세환급제도, 이용자 더 편리해진다”	조세특례제한법 (' 17.9월)
			국세청 소비세과 (044-204-3392)

02 교육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사항	다학기제	2~4학기 중 선택	2학기 이상에서 선택	고등교육법 시행령 ('17.5.8)
	유연학기제	통상 동일한 학기 운영 (전공 · 학년 · 학위 과정 무관)	전공별 · 학년별 · 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허용	
	융합전공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 간 연계전공 운영	국내 · 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가능 (학과 조정 필요 없음)	
	전공선택제	소속학과 전공필수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선택 가능 (전공필수제 폐지)	
	집중이수제	수업일수(30주 이상) 규정 하에서 학기당 통상 15주 수업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교과별 집중수업 가능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044-203- 6252)
	출석기준	규정 없음	출석 등 학점취득 기준 학칙에 규정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교육부 규정상 금지	명시적 허용	
	이동수업	원칙적 금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 제한적 허용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자 확대</p>	<p>생후 6~12개월 미만을 대상으로 무료접종 지원</p>	<p>생후 6 ~ 59개월 이하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무료접종 지원</p>	<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17.9.4.)</p> <hr/> <p>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19)</p>
<p>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 확대</p>	<p>임신한 자(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한해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지원</p>	<p>임신상태가 종료(단,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지원 가능</p> <p>☞(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p>	<p>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7.9월예정)</p> <hr/> <p>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1,2734)</p>
<p>고위험 임신부가 안전한 환경에서 분만할 수 있도록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 9개소 • 신생아 집중치료실 430병상 	<p>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13개소 신생아 집중치료실 455병상</p>	<p>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3)</p>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둘째 자녀 아빠의 달 지원 확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 휴직 사용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상한액 150 만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 (상한액 150만원) '17.7.1. 이후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 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17. 7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제도 개선	육아휴직급여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지급	육아휴직급여 25%는 복귀 후 6개월 근무시 지급(사후지급금 제도) 기간제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만료시 사후지급금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 ('17. 7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6)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대상 확대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확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 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17. 7월)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044-202-7497)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청년여성으로 확대	여성인재 아카데미 여성중간 관리자 이상 교육 중간관리자 기본과정 교육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청년여성(대학생, 사회초년생) 대상 과정 신규 개설 중간관리자 기본과정 수료생 대상 심화과정 신규 개설 ☞(참고) 여성인재 아카데미 홈페이지 : http://kwla.kigepe.or.kr	신입직원 ('17년 9월) 대학생 등 ('17년 10월)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7)
자녀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내실화	-	부모교육 매뉴얼·콘텐츠 개발(매뉴얼 12종) 부모교육 전문강사 양성(약 200명)	- ('17년 7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5)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 강화 및 자녀양육 지원	-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 개소 - 서대문구 소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교실, 도서실 등 별도 설치 -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 수업 진행 ☞(참고) 입소문의 : 애란원(나래대안학교) 02-363-4750, 4720 * 온라인 입소상담 : www.aeranwon.org	- ('17.9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2100-6352,6348)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안 시행	-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의에 경력단절 사유로 ‘혼인’ 추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새일센터의 법적 명칭)를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 및 창업지원 기능 등을 추가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지정 근거 마련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 지원 법적 근거 마련 ('17.3.2)	경력단절여성법 ('17.9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02-2100-6202)

인사혁신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둘째 이상 자녀 '아빠의 달' 수당 지급상한액 인상</p>	<p>상한액 150만원</p>	<p>둘째 이상 자녀 : 상한액 200만원</p> <p>- 둘째 이상 자녀('17.7.1일 이후 출생)에 대해 '아빠의 달' 수당* 적용 시 지급</p> <p>* '아빠의 달' 수당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월봉급액(민간은 통상임금) 지급</p> <p>※ 고용보험법 적용 민간근로자와 동일 기준으로 인상</p> <p>☞(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아빠의달 수당 확대</p>	<p>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7.7.1.)</p> <hr/> <p>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044-201-8397)</p>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1,000명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스키장, 골프장 등)	2017년 12월부터 당구장 및 스크린 골프장 등 체육시설* 중 실내에 설치한 업소 또한 금연구역 지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	국민건강증진법 ('17.12)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2822)
정신의료기관 입퇴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요건)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을 할 필요 중 하나만 충족시 • (입원절차)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정신과 전문의 1인 진단 → 위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6개월간 입원 • (계속입원 심사주기) 6개월 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요건) -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 모두 충족시 • (입원절차) - (1단계) 보호의무자 2인 신청 + 정신과 전문의 1인 진단 → 위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2주간 진단을 위한 입원 - (2단계) 1단계 이후 소속이 다른 정신과 전문의 1인 소견 → 3개월 간 치료를 위한 입원 • (입원기간 연장 심사주기) - 1, 2단계 → 3개월 → 3개월 → 6개월 마다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정보 > 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 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7. 5.3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044-202-2863)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에의한 지급정지 허용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 가입자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강제로 지급정지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에 의해 지급정지 및 납부재개 가능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법안, 3.2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17. 9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32)
희망키움통장 I 월 저축액	월 10만원	월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 선택 가능	희망·내일 키움통장 사업안내 ('17. 8월)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202-3077)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시행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수급이 가능하더라도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함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을 안내해 드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17.8.9.)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 기반과 (044-202-3321)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의료기관별 자체적으로 금액 설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을 고시로 정하여 운영	의료법 제45조의3 ('17.9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202-2473)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저소득층 기저귀 교체 분유 지원 바우처 잔여 포인트 문자 안내 실시	PC 모바일을 통해 바우처 잔액 및 사용기간을 확인	대상자에게 바우처 잔액 및 사용기간을 문자서비스(SMS)로 안내	(' 17. 7. 5.)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044-202-3391)
5가 혼합백신 국가예방접종 신규 도입	지원백신: 16종 * 16종: BCG, HepB, DTaP, IPV, DTaP-IPV, Td, Tdap, Hib, MMR,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패렴구균, HepA, HPV,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	지원백신: 17종 * 17종: BCG, HepB, DTaP, IPV, DTaP-IPV, Td, Tdap, Hib, MMR, 수두, 일본뇌염(생백신, 사백신), 패렴구균, HepA, HPV, 인플루엔자, DTaP-IPV/ Hib(추가) 무료접종기관: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참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5가지 감염병을 예방하는 5가 혼합백신 도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4조 (' 17. 6. 1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9)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대상 확대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및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만 가입가능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의 가입 가능 -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지급받는 재직근로자,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도 가입 가능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16조의2 (' 17. 7. 26.)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8)
안전검사 대상 확대	프레스,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13종	안전검사 대상에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을 추가(13종 → 15종) - (검사 주기) 설치가 끝난 날(' 17. 10. 29.)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 17. 10. 29. 이전 설치되어 사용중인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 18. 12. 31. 까지 최초 안전검사 실시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17. 10. 29.)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33)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청소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온라인으로 확대	오프라인으로 청소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 신청	청소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참고) 여성가족부홈페이지 > 뉴스·소식 > 보도자료 > 대한민국 청소년, 이제 '청소년증' 하나면 충분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17. 12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41)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사전 예보제 운영	국내 연안의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보가 2~3주 간격으로 이루어져 사전예방에 한계	국내 연안의 비브리오 패혈증균 발생 실시간 예보를 통해 비브리오 패혈증 발생 사전 예방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 안전과 (043-719-3244)
식중독균 균주은행 구축·운영	식품 유래 식중독균을 초저온 냉동고에 단순 보관	식중독균의 체계적 보관·관리를 위한 전용 시설·설비 도입 및 전문적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식품위생법 제86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05) 평가원 미생물과 (043-719-4302)
프랜차이즈 당류 저감 매장 운영 가이드 마련	당류 함량에 대한 고객 선택사항이 없음	당류 매장 내 음식의 당류함량 선택이 가능해짐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 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62)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인화상채팅 등에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게시	성매매 처벌 등 경고 문구 게시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 추가 게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17.6.21.)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100-6398)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종사자격취득 제한 강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3회 위반한 자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무면허로 처벌받거나 면허정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대형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최근 3년간 난폭운전, 대열운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7. 7월)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17)

국민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	신설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17.1.8)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 (044-205-5353)
재난·안전표지판 디자인 개선	종류별 디자인통일성 미흡, 그래픽 심볼 부재	국내외 기준(ISO, KS)에 적합한 형태 및 색상, 디자인 심볼 적용 주요 내용 외국어 병행 표기, 국가지점번호 추가, 조명시설 설치 등 야간 시인성 강화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재난·안전표지판 확 달라진다!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044-205-4211)
연안체험활동 신고기관 변경	지방자치단체 종이서류 제출 신고	해양경비안전서(안전센터)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활용 신고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17.10.19.) 국민안전처해양안전 수상레저과 (044-205-2453)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맞춤형서비스 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 및 내진능력 공개	지진하중 상향 적용	지진구역계수 100% 적용 ☞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내진설계 강화방안 공지	건축구조기준 ('16. 5월)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042-724-7418)
	내진능력 공개	준공표지판에 공개 ☞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내진설계 강화방안 공지	-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042-724-7418)
	내진등급 상향 적용	수요기관과 협의 후, 내진등급 상향 적용 ☞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내진설계 강화방안 공지	건축구조기준 ('16. 5월)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042-724-7418)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 변경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 ④ (생략)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⑤ _____ _____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_____, <단서 삭제>	도로교통법 ('17. 6월)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통학버스 운행 종료 후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 신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① ~ ③ (생략) <신 설>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전자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17. 6월)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적사항 제공 의무 부과	<p>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 <신 설></p>	<p>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_____ _____ _____ _____ 다음 각 호의 _____ .</p> <p>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p>	<p>도로교통법 ('17. 6월)</p> <hr/> <p>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552)</p>
운전면허 발급시 지문 확인	<p><신 설>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p>	<p>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 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p>	<p>도로교통법 ('17. 6월)</p> <hr/> <p>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p>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외국인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p><신 설>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p>	<p>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p>	<p>도로교통법 ('17. 6월)</p> <hr/> <p>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2253)</p>
과태료 부가 항목(5개) 확대	<p>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 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_____,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_____ _____ 제25조 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_____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p>	<p>도로교통법 ('17. 6월)</p> <hr/> <p>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p>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안전삼각대 설치위치 탄력적 조정</p>	<p>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 15와 같다.</p> <p>② 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p>	<p>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p> <p>1. _____ 2. _____</p> <p><삭 제></p> <p>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p>	<p>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17.6월)</p> <p>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50-2252)</p>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조사자료 제출명령 등 불이행 시 형벌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가능</p>	<p>과태료 부과</p>	<p>과태료 부과 폐지 및 형벌부과(2017.7.19.) 이행강제금 부과(2017.10.19.)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30.),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6.22.)</p>	<p>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 17.7월, 10월)</p>
			<p>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 (044-200-4303)</p>
<p>총수입가 사익편취 행위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p>	<p>신고포상금 미지급</p>	<p>신고포상금 지급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공정위 뉴스 > 보도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p>	<p>공정거래법 시행령 (' 17. 10월)</p>
			<p>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044-200-4491)</p>
<p>공시대상기업집단 도입</p>	<p>자산총액 5~10조원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지 않음</p>	<p>자산총액 5~10조원 기업집단에 사익편취 규제 및 공시의무 적용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 > 보도 >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총수입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2017.3.30.)</p>	<p>공정거래법 (' 17. 7월)</p>
			<p>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 (044-200-4332)</p>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현역병 인사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국방부 「병 인사 관리 훈령」 제정)</p>	-	<p>제정안 내용</p> <p>① 부대 및 특기 분류 :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 분류결과 3년간 보관</p> <p>② 보직 : 병과와 특기에 부합되는 직위에 최초 배치되면 전역시까지 근무</p> <p>③ 재보직 :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병 등으로 재보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나 질병 등 임무수행 불가능한 경우' 등 기준 명시</p> <p>④ 검증 : 분류결과와 실제보직을 정기적으로 검증, 위반시 관련자 처벌</p> <p>⑤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 : 폭행, 가혹 행위, 성폭력 등의 피해자와 내부 공익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관리 원칙을 명시</p> <p>⑥ 전투부대 지원 : 전방 및 해·강안 전투부대 복무 희망시 지원 가능</p>	<p>「병 인사관리 훈령」 ('17.7.1.)</p> <p>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p>
<p>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p>	-	<p>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분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장애인이 된 병 또는 예비역 병(27세 이하)으로서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전형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부사관으로 임용</p> <p>☞(참고) 국방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관련법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제14조)</p>	<p>군인사법 시행규칙 ('17. 7월)</p> <p>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748-5128)</p>
<p>부사관의 의무복무 기간을 4년으로 통일 (3년 → 4년)</p>	3년	<p>4년으로 연장</p> <p>☞(참고) 군인사법</p>	<p>군인사법 ('17. 6월)</p> <p>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3)</p>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병 복무를 하고 있는 외국 시민권자 및 재외국민 등의 복지 증진	입영희망원을 제출한사람(시민권을 가진복수국적자)에 한해 지급	입영희망원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자진 입대한 복수국적자(시민권자)가 시민권 국가로 정기휴가 및 전역시 귀가 여비 지급	국외여비지급 훈령 ('17.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거주 확인) - 부· 모 또는 친권자를포함한 본인의 '전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를 통해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거주 확인) - 부· 모 또는 친권자, 배우자의 “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확인이 가능한증빙 서류를 통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부여) -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급지급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부여) - 업무담당자의 착오, 지연 등으로 개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는 소급 지급 	국방부 복지정책과 (02-2023-7435)
예비군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	최초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사용불편 전자정부 인증센터 이용 * 아이폰 접속 제한 Active-X 방식 적용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메뉴 구성 개선 (편의성, 실효성) 예비군홈페이지 이용 * 모든 스마트폰 접속 용이 Active-X 방식 적용하지 않음	국방동원정보체계 운영지침 ('17. 9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748-5243)

병무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위공직자 등 사회관심계층 병적별도관리대상 확대	「공직자윤리법」 10조에 해당하는 공직자(1급 이상) 및 그 자녀의 병 적 별도관리	병적별도관리 대상 확대 -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선수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대중문화예술인 - 소득세법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고소득자와 그 자녀	병역법 제77조의 4 (‘17. 9월)
			공정병역추진단 (042-481-2900)
민원인 선택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일괄 증명	군복무 여부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하는 항목 (군별, 계급, 군번 등)을 선택적으로 기재하여 발급	병역법 시행규칙 (‘17. 9월)
			병역공개과 (042-481-2775)
잔여 복무기간 3개월 미만자 복무분야 변경가능	미실시	생산설비 폐쇄 등 사유의 잔여 복무기간 3개 월 미만 산업기능요원이 소지하고 있는 국가 기술자격증 직무분야 외 다른 제조·생산 복무분야로 변경 가능	전문/산업 업무규정(훈령) (‘17. 7월)
			산업지원과 (042-481-2773)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병역 면제 후 처분변경 근거 부재	다시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병역처분 변경 제도 마련	병역법, 시행령 (‘17. 9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68)
고졸 인정 검정 고시 합격자 병역처분 변경	당초 병역 처분 유지 (보충역)	병역처분 직권 변경(현역병입영 대상)	병역법, 시행령 (‘17. 9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의 질병 치유사유 현역병 입영 병역처분변경 신청	병역법, 시행령 (‘17. 9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18)
예술·체육요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편입 취소	-	의무복무기간 중 범죄행위로 금고이상 실형 선고 시 편입 취소	병역법 제33조의10 (‘17. 9월)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5)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실수행 인정제도	신설	핵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가 연구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면제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17.9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2079-6317)
국방과학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	기술수출기술료 일괄 납부 착수기본료 제한적 분할납부	국외 기술실기계약 기술료 : 착수기본료와 경상기술료 분리 그 외의 기술수출 기술료 : 외국으로부터 대금 수령 일정에 따라 납부 착수기본료 분할납부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청 행정규칙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17.5.12)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02-2079-6336))
군수품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신설	군수품 무역대리업체가 중개·대리행위 통해 외국기업과 수수료에 관한 계약 체결시 방위사업청에 신고하도록 함 계약과정에서 금액 변경시 변경 신고하도록 함 미·거짓 신고 업체에 대한 벌칙조항 규정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17.6.21)
			방위사업청 계약제도심사팀 (02-2079-4199)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원가 부당이득 가산금 규모 확대	부당이득금의 1배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 17.6.21.)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02-2079-4278)
원가 부당이득 가산금 산정기준 및 방법	신설	<p>가산금 기본금액의 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부당이득금 5억원 이상, 부당이득금 비율 20% 이상 : 부당이득금의 2배 - ①의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이득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부당이득금 비율 10% 이상 20% 미만 : 부당이득금의 1.5배 - 그 밖의 경우 : 부당이득금의 1배 <p>가산금의 가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자와 공모한 경우 : 50% 가중 - 최근 5년 이내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50% 가중 - 최근 5년 이내 적발 횟수가 2회인 경우 : 30% 가중 * 시행일 이전의 부당이득행위는 횡수 산정에 미포함 <p>가산금의 감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 50% 경감 - 부당이득행위가 적발된 후 다른 부당이득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 30% 경감 * 이 경우 적발된 부당이득행위, 자진하여 신고한 부당이득행위 모두에 적용 <p>☞(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 시행령</p>	방위사업법 시행령 (' 17.6.21.)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 (02-2079-4278)
국방과학연구소 시설·장비 공동 활용 제도 도입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련기관의 수요를 제출받아 공동 활용 계획 수립	<p>무기체계에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시설·장비를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을 통해 수시 신청 가능</p> <p>☞(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법령 > 방위사업법</p>	방위사업법 (' 17. 6.21)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2079-6371)

07 일반공공행정

외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권 수록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 완화	일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표기 허용	누구든지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규칙 ('17.6월)
			외교부 여권과 (02-2100-7722)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여권사본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으로 여권 사본을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할 부담 완화 ☞(참고) 외교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여권법 시행규칙 ('17.6월)
			외교부 여권과 (02-2100-7722)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법 시행	신 설	신용카드·직불카드에 의한 과태료 납부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 사유 등 정비, 체납 가산금을 인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제도 도입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17.6.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3)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 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 및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조정서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주택임대차 보호법 ('17.5.30.)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3)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송화물에 대한 스마트 통관심사제도 도입	-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가격 미화 2,000불 이하 전자상거래 물품과 요건확인 비해당 물품에 대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 (단, 수리전 세관에서 검사선별 가능)	「특송물품 수입통관처리에 관한 고시」 (’17.10월)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5)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상감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선	기상현상에 대해서 실시간 제보	기상현상뿐만 아니라 계절관측(동·식물), 기상재해관측 등 제보기능 추가	-
			기상청 관측정책과 (02-2181-0696)
대국민 기상 오픈 API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대국민 실시간 기상정보 오픈 API 7종 서비스	기존 7종 외 추가로 2종(지진정보, 기상특보 정보) 제공하여 총 9종 서비스 ☞(참고)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 > 오픈 API > 기상청 검색하여 제공되는 오픈API 이용	-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02-2181-0415)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항만기상정보 서비스를 전국 항만에 확대 시행</p>	<p>서비스 대상지역 한정 서비스 제공 별도 웹페이지 부재</p>	<p>서비스 대상지역 전국 확대 - 8개 지방(지)청 관할 53개 항 전국 항만기상정보 서비스 웹페이지 개설</p>	<p>- 기상청 해양기상과 (02-2181-0743)</p>
<p>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취득의 결격사유 완화</p>	<p>‘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음</p>	<p>‘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삭제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상산업진흥법 제19조</p>	<p>기상산업진흥법 (‘17.4.18.)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2-2181-0850)</p>
<p>기상사업자 등록 결격 사유 완화</p>	<p>기상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2년이 경과 결격 사유로 등록이 취소 된 경우 2년간 기상사업 등록을 할 수 없음</p>	<p>결격사유 경과기관 1년 ‘결격 사유로 인해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결격사유에서 제외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상산업진흥법 제7조</p>	<p>기상산업진흥법 (‘17.6.28.)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2-2181-0850)</p>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등급표시 “특, 상, 보통, 등외, 미검사”	“특, 상, 보통, 등외”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20)
맞춤형 농지연금 신규 상품 출시	종신형 기간형 전후후박형(* 17.3 출시)	인출형(종신형 신규상품), 경영이양형(기간 형 신규상품) 출시 ☞(참고) 1577-7770 (농지연금 고객센터) 농지연금포탈 www.fplove.or.kr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17 하반기중 개정예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농지임대수탁사업 업무 지침 개정	2030세대는 1순위 지원자에 포함하여 관리 ※ 1순위 지원자: 「2030세대 지원 계획」 대상자, 귀농자,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최우선지원) 2030세대 (2순위 지원) 귀농자,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 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참고) 농지은행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농지임대사업 2030세대 농지지원 강화	업무지침 시행 (* 17.5월)
			농식품부 농지과 (044-201-1738)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등의 출입국 관리 강화	출국 신고만 의무	출입국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참고) 농식품부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출·입국 신고 강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 17.6.3)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2)
농촌융복합시설 제도 도입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불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시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 가능 인증 또는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대상 인허가 확대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입지규제 완화하여 6차산업 걸림돌 없앤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 17.9월)
			농식품부 농촌산업과 (044-201-1582)

농림축산식품부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축산물이력제 적용대상 영업자 확대		유통단계 의무 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 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추가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가축 및 축 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478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7.6.28) 농림축산 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62)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및 위반자 처벌 강화	농수산물 가공품 및 버섯 류 원산 지 표시 방법 개선	수입산	외국산(○○국, ○○국, ○○국 등)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요령(고시) (’16. 4월) * 의무시행 (’17. 7월)
	위반자 처벌강화	신설	버섯(국내산) * 외국에서 접종·배양 후 수입하여 재배한 버섯에 접종·배양국 정보 추가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 정책과 (044-201-2276)
			위반자 의무교육 실시 * 미표시 2회 또는 거짓표시 위반자 의무교육(집합 교육 2시간 이상) 재범자 형량하한제 도입 * 5년 이내 거짓표시 재범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관리의무 부과 *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 처벌 대폭 강화	원산지표시법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 정책과 (044-201-2276)
직거래농산물 지원 확대 및 우수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추진		신설	우수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시행(10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개정) (’17.10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85)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관련 용어 정비		사용승인 사용료	• (명칭 변경) - 사용승인 → 사용허가 - 사용경비 → 사용료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및 시행령 (’17.6.28)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044-201-185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촌출신학자금 대출 재학생 기 등록자 용자 허용		기등록 재학생에 대해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 제한	2017. 2학기부터 기등록 재학생에 대한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용자 제한 완화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 ☞(참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게시 예정	2017.2학기 학자금대출 지침 개정 (' 17. 8월) 농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8)
건강한식 서포터즈 모집		참여자들 국내 대학생으로 한정	지역, 나이, 학력, 국적, 직업 등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세계인에게 한식의 매력을 함께 알려요	-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2)
내재해형 규격 운영 개선	신규 등록 절차 개선	민원인 → 시·군·구 → 농식품부 → 농진청	민원인 → 농진청 - 신청서와 구비서류(설계도, 시방서, 구조계 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신규 등록 신청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 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07. 4월)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 정책과 (044-201-2276)
	내재해형 규격 여부 해석 신설	-	신청서와 구비서류(설계도, 시방서, 구조계산 서)를 제출함으로써 내재해형 규격 여부 해석 요청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 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 07. 4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044-201-2258)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신설		제도 없음	도시농업과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인 “도시농 업관리사” 신설 - (시행령) 자격취득조건,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관리사 의무배치조항 신설 - (시행규칙) 자격취득을 위해 이수해야할 교육 과정 정의, 자격발급절차 등 규정 ☞(참고)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 "모두가 도시 농부"(http://www.modunong.or.kr)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 17.9.22)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7)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신설	육묘업 등록제 : 일정한 시설+16시간 이상의 육묘교육과정 이수 후 등록 신청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 묘 판매 시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종자산업법 시행령	종자산업법 시행령 ('17.12.28)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9)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주산지협의체 제도 신설	신설	주산지협의체 설치·구성 및 품목별 중앙주산지협의회 구성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9.22)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9)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식물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신설	방제대상 병해충 등 발생 시 식물의 재배자에게 신고의무 부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에 대한 수입검역 실시	식물 등 기존 검역물품 검역	병해충전염우려물품(이사 물품, 목재가구류, 폐지, 침목 등) 검역 추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탁송품에 대한 검역체계 마련	수입자가 직접 검역신청하거나 탁송품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검역신청	탁송업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 발견시 검역기관에 고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제도 도입	검역대행자 자격요건 없음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된 자에게 검역대행자 자격 부여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 의무화	신설	격리재배대상 묘목을 수입하려는 자는 품목명, 수입일, 수입자 및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꼬리표를 묘목 개체별 또는 최소 포장단위별로 부착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수입금지 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허용	시험연구용, 농업유전자원용, 국제박람회용의 경우에만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 가능	수입금지 식물 중 병해충 전파우려가 없는 식물을 재수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입 허용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식물류 수출입시,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출 허용	식물류 수출입시 식물검역증명서 (종이 문서)만 가능	식물검역증명서(종이 문서) 외 국제 표준서식에 맞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제출 가능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제 도입	수출입식물 검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업무 수행	민간연구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정밀검사업무 수행 가능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식물방역법령	식물방역법령 ('17.12.3)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2074)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보호대상해양생물 대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매매를 목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 채취, 유통 및 보관 등을 하는 죄를 범하여 징 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 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 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7. 6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1-531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상한액 폐지	상한액: 20억원	상한액 폐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7. 6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1-5315)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대행	협력금을 납부한 자만이 반환사업 시행 가능	협력금을 납부한 자 외에 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로서 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도 반환사업의 시행이 가능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7. 6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1-5315)
법정 보호생물의 조업 중 혼획방지	-	누구든지 해양포유동물 및 보호대상해양 생물이 조업 중 혼획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17. 6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1-5315)
수출지원센터 확대	중국(3개소)에만 설치· 운영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에 확대 설치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44-200-5481)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24품목	27품목으로 확대(터봇, 메기, 향어 추가)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소식바다 > 보도자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시행 ('17.6.1)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남해어업관리단 신설에 따른 어업관리 역량 강화	<div style="text-align: center;"> <p>개편안</p> </div>		
	<p>해역변경도</p>		
내수면에서 뱀장어 포획이 금지되는 기간 및 체장	뱀장어(Anguilla japonica) :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부재	뱀장어(Anguilla japonica) :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신설 ① 금지기간 : 10.1 ~ 3.31(다만, 맘·호소는 제외 하고, 15cm 미만은 금지기간에도 포획 가능) ② 금지체장 : 15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	내수면어업법시행령 ('17.7.1)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7)

산림청

구분	종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카드납부 가능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도 납부 가능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17.10.19)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소나무재선충병 혼증더미 사후이력제도 도입	신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 혼증더미 사후이력 제도 도입 - 일련번호, 작업일, 작업자, 처리약품 등의 기록·관리가 의무화 - 혼증처리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방제대책본부장이 중앙방제대책본부장에게 결과보고 의무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7.9.22)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과 (042-481-4076)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허용행위 완화	신설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정비 허용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무선국 중 기지국 설치 허용 백두대간보호지역 완충구역(초지)에서 축산업 관련 체험시설을 설치 허용 ☞(참고) 산림청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제·개정법령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7.10.19)
		산림청 백두대간 보전팀 (042-481-8814)	
토석채취사업장내 외부토석 반입의 제한적 허용	토석채취장 내 복구목적 이외의 외부토석 반입은 금지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 과정에서 나온 토석과 도로·철도·궤도·운하·수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터널 또는 갱도의 굴착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토석채취사업장으로 반입 가능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17.10.19)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 금지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	<p>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사업장 겸임금지 사항을 명문화 하여 사업장내 책임성과 안전성을 강화</p> <p>- 단, 연접사업장은 겸임 가능</p> <p>☞(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지관리법</p>	산지관리법 ('17.10.19)
			산림청 산지정책과 (042-481-4141)
산림보호구역 지정예정지 공지대상 확대	산림보호구역 지정시 토지소유자와 자치단체장에게 공지	<p>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 대상을 해당 산림에 대해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거나 토지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무단점유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등으로 확대</p> <p>☞(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림보호법</p>	산림보호법 ('17.7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481-4246)
목재문화체험장의 전문기관 위탁관리	-	<p>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 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p>	목재이용법 ('17. 9월)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481-4204)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연장기간 단축	전문기관이 품질검사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p>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와 연장기간을 종전 최대 60일에서 50일로 단축하여 생산자의 편익을 도모</p> <p>☞(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p>	임업진흥법 ('17.9.22)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208)

09 연구개발

미래창조과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R&D표준서식 간소화	관리목적의 작성항목이 많고, 과다 분량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분량 축소 (정부출연금 연 5 억원 이하 연구내용 5쪽 이내, 5억초과 10쪽 이내 분량 제한 원칙) 아이디어 중심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는 연구개발제안서 도입 연차실적보고 시 정량적 연구성과 목표 및 달성도 표 삭제 최종보고서 작성항목 간소화(12 → 5개)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보도자료 > 연구서식 대폭 간소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7.5.23)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혁신과 (02-2110-2735)

10 산업·에너지·자원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제석유거래업 신설	-	국제석유거래업의 신설 - 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거래 및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 등의 혼합 제조 허용 -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 (사업계획서, 보세구역내 오일저장시설 보유/임대 현황 자료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7. 10월)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 (044-203-5215)
이전심사의 주기	3개월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심사 주기를 45일로 단축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예산·법령 > 최근개정법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부령 제260호)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17. 6. 3)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 (043-870-5346)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기간	미규정	여행·질병 등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0일 이내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예산·법령 > 최근 개정법령 >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17.6.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5132)
안전관리자 직무 대행 자격	미규정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대행: 안전관리원. 다만,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으로 서 가스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 예산·법령 > 최근 개정법령 > 시행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17.6.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044-203-5135, 5132)
나프타부생가스허가 관련 중복 규제 완화	도시가스 사업법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중복허가 발생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아 전용배관을 통해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시설로 공급하는 경우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	도시가스사업법 및 시행규칙 ('17.6월)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044-203-5237)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제조검사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 증명서류로 갈음	한국에너지공단이 외국 현지에서 제조검사 실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2017.12.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203-5383)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외 통관장벽 타파 100일 작전 추진	미규정	해외 통관애로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현장지원을 위해 현지 기동팀을 파견	('17.10월)
			관세청 국제협력팀 (042-481-7971)
원상태 수출절차 간소 화를 통한 수출지원	원상태 수출시 수출신고서 ㉔항목에 수입신고번호 기재 및 수입내역 증빙하고, 환급시 증빙서류 심사	성실 수출기업이 원상태 수출시 수입증빙 내역 제출을 생략하고, 환급신청시 증빙서류 심사로 절차 개선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17,10월)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02)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 신청방법 명확화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방법 규정 없음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을 전자문서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세관장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서면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17. 7월)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858)

중소기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연대 보증 면제 확대	기업평가등급 1~4등급 자동면제, 5등급은 7년 미만 기업에 대해 가산금리(0.5%p) 조건부 면제	업력 5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시 연대보증 입보 전면면제 ☞ (참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정책자금용자 > 용자절차 > 연대보증인 입보 기준	'17년 하반기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계획 ('17. 8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481-4375)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별구제계정 지원	지원 없음	구제급여를 받지 못한 건강피해 신청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구제계정 지원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17. 8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긴급 의료지원	지원 없음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가 가슴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건강 상황에 처할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지원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알림/홍보 > 보도·해명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 ('17. 8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2)
중·소형 경유차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 기준 시행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시 실내 인증 기준만 적용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시 실내시험과 실도로 조건 배출허용기준 모두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7.9.1.)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 위반 제재 강화	인증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 3%, 부과 상한액 100억원	인증 위반 시 과징금 부과율 5%, 부과 상한액 500억원	대기환경보전법 ('17.12.28.)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4)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활성화 추진	선지급 근거 있으나, 활용 미흡, 지급 사례 없음.	세부 규정 및 절차 정비 후 시범사업으로 활성화 추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16. 1월)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3)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해우려제품 5종 신규지정	18종	부동액, 자동차용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틈새충진제 위해우려제품 지정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17. 7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8)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기준 강화	신설	스프레이형 세정제·방향제·탈취제에 사용가능한 살생물물질 목록 및 함량기준 제시 목록 외 살생물물질은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 입증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고시/훈령/예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17. 7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8)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	자율시행(타이어 수입·생산 8개 업체) 의무시행(모든 타이어 수입·생산 업체) ☞(참고) 환경부홈페이지 > 알림/홍보 > 뉴스·공지 > 보도·해명자료 > 저소음 타이어 보급으로 도로소음 줄인다	8개 타이어 제조 및 수입업체와 환경부 MOU체결 ('17. 9월)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3)
석면질병 진단을 위한 지정병원 확대	상급종합병원 등 전국 55개소	300병상 초과하는 종합병원이면서 특수 건강진단기관인 의료기관을 지정병원에 추가하여 약 111개소로 확대	석면피해 구제법 시행령 ('17. 7월)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044-201-6818)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대상 확대	오염된 국가부지 등으로 대상 제한	현행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 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 >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 > 개정안 확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17. 9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044-201-7177)

국가보훈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p>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무료 배송</p>	<p>유족이 직접 보훈관서 등에서 수령 또는 유족 부담으로 퀵서비스 이용</p>	<p>국가유공자 사망 시 지급하는 영구용 태극기 및 국립묘지안장용 유골함을 국가에서 무료로 배송</p> <p>☞(참고) 국가보훈처홈페이지 > 열린마당 > 보훈처소식 > 보도자료 >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무료 배송</p>	<p>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17.6.26.)</p>
			<p>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044-202-5551)</p>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적용 대상법,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핵심사항 인포그래픽

다같이
잡니다